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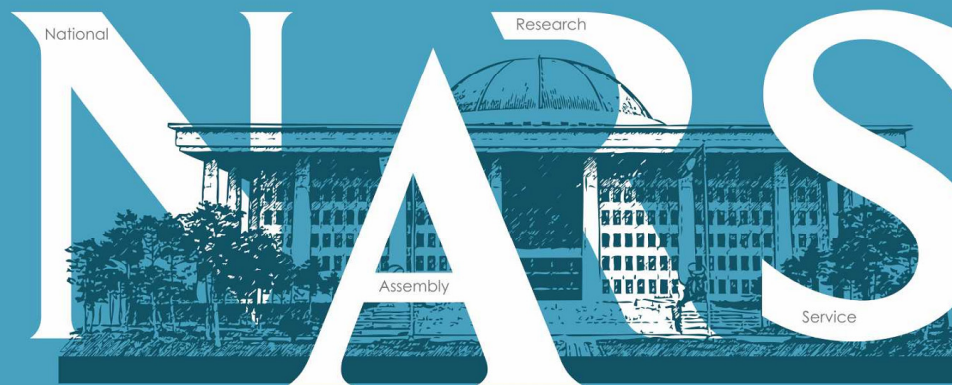


2021. 12. 16.

국회입법조사처 | NARS 입법·정책 | 제98호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심성은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군 인권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심성은(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2021. 12. 16.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NARS 입법·정책은 국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핵심적인 입법 및 정책 현안 주제를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평가하고 입법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가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입법·정책 현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3 및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심의절차를 거쳐 발간(2021. 12. 16.)되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은 국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분석 결과입니다.

요 약

- 2021년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및 공군 부사관의 자살과 육군 부사관의 자살 시도, 공군 병사 간 집단 폭행 및 성추행, 코로나19 자가격리 병사의 부실 식사, 육군 훈련소 화장실 이용시간 제한 등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음
- 2014년 윤일병 사망 사건 등 군 인권침해 사건 발생 시 법률 제도 및 신고·상담 제도 개선, 군 인권교육 활성화 등 군 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들이 개선 혹은 새로 시행된 바 있음
 - 첫째,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군인의 기본권 보장이 법에 명시되었음
 - 둘째, 기존의 신고·상담 창구가 개선되어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킴이시스템이 운용되면서 군 장병의 고충 신고·상담이 전보다 용이해졌음
 - 셋째, 군 인권교육 시수가 증가했으며 교육프로그램도 개선되었음
- 군 인권교육 제도 개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음
 - 첫째, 자살, 폭행 등 인권침해 상황이 일부 개선되었음. 일례로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가 2011년 101명에서 2020년 44명으로 감소했음
 - 둘째, 군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의지가 강화되었음
 - 기존의 신고·상담 창구를 개선한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킴이시스템의 이용 건수가 최근 5~6년간 각각 3.5배, 약 3배 증가했음. 이는 군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군 장병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음
 - 셋째, 군 인권교육 활성화로 군 장병의 인권 인식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인권교육을 통해 군 장병들은 법률적 지식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 숙지하게 되었음
- 넷째, 시민들의 군 인권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음
 -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 설문조사에 따르면 군 인권 보장에 대한 긍정적 대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의 입건 수가 보합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해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
 - 첫째, 군 성범죄와 가혹행위 입건 수는 소폭 증가 혹은 감소하는 등 큰 변화가 없어 제도 개선에 따른 효과가 제한적인 상황임
 - 둘째, 폭행 입건 수는 25%, 모욕 입건 수도 22% 증가했음
- 향후 군 인권의 보다 효과적인 보장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신고·상담 센터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다양한 신고·상담 채널을 통합해 군 장병들이 기억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선할 수 있음
 - 장교와 준·부사관의 신고·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신고·상담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군 인권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방부의 군 인권교육 교재 중 부적절하다고 지적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군 인권 감수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수 있음

- 군 병영생활을 관리하는 간부와 기초적인 군 인권 지식이 부족한 전입신병에 대한 교육 시수 증가를 논의할 수 있음
 - 인권교관 지정 시 역량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음
- 셋째, 2021년 12월 9일 군인권보호관이 5년 간 논의 끝에 신설되었음
- 2017년부터 군인권보호관 신설 관련 법률안들이 발의되었으나 소속과 권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채택이 지연된 바 있음
 - 군인권보호관은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임. 단 군 부대 방문 시 선통지 의무 및 국방부장관의 방문 중지권 등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었음
 - 향후 군인권보호관이 시행되면 군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해 군인권의 실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차 례

□ 요약

I. 서론 / 1

II. 군 인권 제도 / 3

| | |
|--------------------|---|
| 1. 법 제도 | 3 |
| 2. 신고·상담 제도 | 6 |
| 가. 국방헬프콜 | 6 |
| 나. 군인권지킴이 | 8 |
| 3. 군 인권교육 제도 | 9 |

III. 군 인권 현황과 개선과제 / 10

| | |
|------------------------|----|
| 1. 군 인권 제도 운영 현황 | 10 |
| 가. 신고·상담센터 | 10 |
| (1) 국방헬프콜 | 10 |
| (2) 군인권지킴이 | 16 |
| 나. 군 인권교육 | 19 |
| 2. 군 인권 실태 | 22 |
| 가. 사망 사건 | 22 |
| 나. 성범죄 | 26 |
| 다. 폭행·가혹행위·모욕 | 31 |

| | |
|----------------------|----|
| 라. 군 인권 인식 변화 | 36 |
| 3. 개선과제 | 39 |
| 가. 신고·상담 제도 개선 | 40 |
| 나. 군 인권교육 개선 | 41 |
| 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 42 |

IV. 결론 / 45

참고문헌

부록

표 차례

| | |
|-------------------------------------|----|
| [표 1] 국방헬프콜 신고·상담 추이 | 10 |
| [표 2] 국방헬프콜 성폭력 신고·상담 추이 | 12 |
| [표 3] 국방헬프콜 군범죄 신고·상담 추이 | 13 |
| [표 4] 국방헬프콜 병영생활 고충 신고·상담 추이 | 14 |
| [표 5] 군인권지킴이 신고·상담 추이 | 16 |
| [표 6] 군인권지킴이 진정 조치 | 19 |
| [표 7] 군 인권교육 현황 | 20 |
| [표 8] 군 사망사고 원인 | 23 |
| [표 9] 군 자살률(10만 명당) | 24 |
| [표 10]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성범죄 입건 수 | 26 |
| [표 11] 군별 성범죄 기소율 | 29 |
| [표 12]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폭행 입건 수 | 31 |
| [표 13]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가혹행위 입건 수 | 33 |
| [표 14]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모욕 입건 수 | 34 |
| [표 15]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38 |

그림 차례

| | |
|--|----|
| [그림 1] 군 사망사고 추이 | 22 |
| [그림 2] 군인과 일반인의 10만 명 당 자살자 수 비교 | 25 |
| [그림 3] 군별 성범죄 입건 수 | 27 |
| [그림 4] 군별 성범죄 기소 건수 | 28 |
| [그림 5] 계급별 성범죄 입건 수 | 30 |
| [그림 6] 군별 폭행 입건 수 | 31 |
| [그림 7] 계급별 폭행 입건 수 | 32 |
| [그림 8] 군별 가혹행위 입건 수 | 33 |
| [그림 9] 계급별 가혹행위 입건 수 | 34 |
| [그림 10] 군별 모욕 입건 수 | 35 |
| [그림 11] 계급별 모욕 입건 수 | 36 |
| [그림 12]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 37 |

I. 서론

2021년 군 인권침해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2021년 4월 자가격리 장병의 부실 식사와 육군훈련소 화장실 이용시간 2분 제한, 5월 육군훈련소의 면담 체크리스트에 이성친구의 낙태 경험 문항 포함, 5월 동료에게 성추행 당한 공군 여부사관의 자살 사건, 7월 공군 내 후임병 집단 폭행·성추행, 8월 성추행 피해를 입은 해군 여부사관 자살 사건과 공군 여부사관 자살 시도 등 끊이지 않는 인권침해 사건으로 인해 사회적 공분이 야기되었으며 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다시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군 인권침해 사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人糞事件)과 28사단 총기난사사건, 2011년 해병대 총기사건, 2014년 윤일병사망 사건 등 군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군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제도가 점차 개선되었다.

첫째, 군 인권 보장을 명시한 법률이 신설되었다. 2016년 6월 30일 군인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이 시행되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평등, 사생활, 통신의 비밀보장, 종교생활, 대외활동, 의료권, 휴가 등 군 인권의 헌법적 가치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2014년 이후 군 인권침해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들이 통합·개소되어 피해자들이 더 용이하게 신고·상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가장 많은 신고·상담을 접수하고 있는 국방헬프콜은 2014년 11월 27일 「부대관리훈령」 시행에 따라 육·해·공군에서 각각 실시하던 군 인권 피해자의 신고 전화가 통합된 것이다. 2015년 2월 2일에는 각 군의 인트라넷으로 운영되던 군 인

권침해 신고·상담 창구를 인터넷으로 확장한 군인권지킴이시스템이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국방헬프콜과 인권지킴이시스템은 이용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셋째, 2010년대 중반부터 군 인권교육 강의와 이수자 수가 증가하는 등 군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인권업무 종사자와 장교 등에 대한 인권교육이 더 빈번해졌으며 군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도 정기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2021년 1월에는 군 병사들의 인권교육 시간이 분기별 최소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어나는 등 인권교육 정책이 강화되었다.

제도 개선 결과,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 수 감소, 군 인권교육을 통한 인권 인식 제고, 신고·상담을 통해 여러 고충을 해결하려는 군장병의 의지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을 침해하는 성범죄, 폭행 및 가혹행위, 모욕 등 군범죄 입건 수가 보합 혹은 증가 추세를 보이는 등 군 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본 보고서는 2010년대 군 인권 관련 법률, 신고·상담, 군 인권교육 등 개선된 군 인권 제도 및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군 범죄 입건 건수를 종류별로 분석해 현 군 인권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방통계연보 2020』, 국방부에서 수차례에 걸쳐 제출한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등의 자료들을 분석하고 국방부 산하의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킴이,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접 조사(FGI: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집단면접 대상자는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담당자 1명, 국방헬프콜을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의 상담관과 관리자 4명, 군인권지킴이를 관할하는 국방부 인권담당관 2명, 군 인권센터 담당자 4명 등이다.¹⁾

1) 국방부 국방헬프콜, 병영문화혁신팀, 군인권지킴이 담당자 면접은 각각 2020년 10월 16일 10시, 2시, 3시 반에 실시되었으며, 군 인권센터 면접은 2020년 11월 16일 10시 반부터 2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II. 군 인권 제도

1. 법 제도

군은 폐쇄된 공간과 엄격한 위계질서라는 특성상 인권²⁾ 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이 쉽게 외부로 알려지기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하지만 군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군 인권침해 사건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으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군 인권 관련 제도도 개선되었다.

2005년 1월에는 신병 훈련을 맡은 교관이 훈련병 192명에게 인분을 먹도록 강요한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2006년 국방부 내 인권과가 신설되었으며 2007년에는 육·해·공군에도 인권과 및 인권상담실이 설치되었다.

2011년 7월에는 해병대 해안 초소에서 김모 상병이 총기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2011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라 한다)가 해병대 가혹행위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에 관한 정책 마련과 예산 지원을 권고했다.³⁾ 이를 계기로 2012년 해병대에도 인권과가 신설되었으며, 국방부에서는 2013년 ‘2014~2018 국방인권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한 이래 5년마다 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정책과제에 대한 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2)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며 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포괄한다. 군 인권의 경우 군인복무기본법에서는 군인의 기본권에 대해 명시하는 반면, 「군 인권업무 훈령」 등에서는 군 인권에 대해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은 혼용되어 사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헌법학자들 역시 기본권과 기본적 인권을 혼용하는 바, 본고에서는 군 인권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전광석, 『한국헌법론』, 집현재, 2011, p. 18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2, p. 318; 이동휘,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고찰」,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2018, p. 81.

3) 국민인권위원회, 『“해병대 총기사망 사건, 인권침해 악습이 원인” - 인권위, 군 인권 보호 및 병영문화 개선 방안 마련 등 권고-』, 보도자료, 2011.9.6.

2014~2018년 종합계획의 주요 목표는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 통합인권 시스템 구축, 인권교관 양성 확대,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었다.⁴⁾ 2019년 이후에는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이 실행되고 있으며 주요 목표로 군인권보호관의 신속한 설치 및 운영, 군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기구 설치, 군 인권자문변호사 제도 신설 등을 들 수 있다.⁵⁾

2014년 4월에는 일명 윤일병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는 군 인권 보장을 위해 보다 본격적인 제도가 채택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사건은 육군 제 28보병사단에서 윤일병이 선임병사들에게 8개월간 폭행당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초기에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결국 언론의 폭로로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사건 이후 군 인권침해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노력이 본격화되었다.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서는 군 인권 개선을 위해 법률안들이 다수 발의되었다. 첫째, 안규백의원안(2012.6.25.),⁶⁾ 안홍준의원안(2014.11.4.),⁷⁾ 심상정의원안(2014.12.2.),⁸⁾ 이개호의원안(2015.3.5.)⁹⁾ 등은 보호받아야 할 군 인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적시하였다. 둘째, 한기호의원안(2012.8.2.),¹⁰⁾ 안홍준의원안(2014.11.4.)¹¹⁾, 이자스민의원안 (2015.11.20.)¹²⁾은 군 인권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4~2018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추진(국방부)”(최종 검색일: 2021.8.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5937791>>.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19~2023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 수립”(최종 검색일: 2021.8.2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18786>>.

6) 「군인지위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0289).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2300).

8) 「군 인권기본법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2764).

9) 「군 인권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4167).

10) 「군인복무기본법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01018).

과 관련된 전담 기구와 제도를 신설하고자 했다. 셋째, 이찬열의원안(2014.6.23.)¹³⁾은 군 복무 부적응 병사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 법률안들을 기반으로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이 채택되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기존 대통령령이었던 「군인복무규율」¹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제한,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율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과 「군인복무규율」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군인의 의무 및 병영생활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을 두는 반면(제1조), 「군인복무규율」은 주로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던 것이다(제1조). 전자는 군 장병의 병영생활에 대한 규율과 함께 군 인권 보장을 중요한 목적으로 하지만 후자는 군 장병의 복무태도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복무규율」에 포함되지 않았던 군 장병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함으로써 군인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군인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제10조), 평등하게 대우받고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제11조). 또 영내 거주 의무가 없는 군인에 대해 영내대기를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제12조).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제13조) “건강을 유지하고 복무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의료처우를 받을

11) 「군 인권보호법안」(안홍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2299).

12)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자스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17827).

13)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0948).

14) 「군인복무규율」은 2016년에 폐지되었다.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제17조). 또 군인복무기본법은 군인의 휴가, 외출, 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군인복무규율」은 휴가, 공가, 외출 등의 유형을 설명할 뿐 이를 보장하는 조항은 없었다(제39조-제42조). 그 외 종교생활과 대외발표 및 활동에 관한 보장은 군인복무기본법과 「군인복무규율」에 모두 명기되어 있다. 군인복무기본법에는 군 장병의 권리와 관련된 조항(제10조-제18조)이 의무 관련 조항(제19조-제34조) 보다 앞에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군 장병의 권리가 의무 사항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외에도 군인복무기본법 제38조(기본권교육 등)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권교육을 군 장병들에게 실시하도록 강제했다. 군 장병에 대한 군 인권교육이 정기적, 지속적으로 실시되도록 한 것이다.

군인복무기본법 하에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있다.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은 제3장(군인의 기본권)에서 영내대기 의무가 없는 군인에게 영내대기를 지시할 경우 영내대기 사유와 개시시점 등을 통보해야 하는 등 영내대기의 예외적 적용에 대한 선제조건을 명시했다.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군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세부사항이 추가되었다. 일례로 2020년 5월에는 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신설해 미세먼지로부터 군 장병을 보호하기 위해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했다.

2. 신고·상담 제도

가. 국방헬프콜

군은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신고·군범죄신고전화 등을 운영했다. 하지

만 육·해·공군 및 각 부대에서 별도로 실시되거나 전화나 인트라넷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 장병들이 손쉽게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다. 국방헬프콜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육·해·공군에서 각각 운용하던 국군생명의 전화, 성범죄신고·군범죄신고전화 등을 2014년 8월 1일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방헬프콜 전용 전화번호인 1303번(군 관련 범죄, 성범죄, 군용품 관련 범죄, 자살예방 상담 등), 인터넷, 인트라넷 등을 활용하여 신고·상담을 접수하게 되었다.

국방헬프콜은 2014년 11월 개정된 「부대관리훈령」 제173조 등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후 2016년 6월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과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는 국방헬프콜의 법률적 근거를 부여했다. 동법령에 따라 국방헬프콜은 군 장병의 군 부적응, 가족관계 및 개인 신상, 구타, 폭언, 가혹행위,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항, 질병 등의 신체적인 문제, 장기복무 군인 가족의 현지 생활 부적응, 성 관련 고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방헬프콜은 군 장병들이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고·상담 채널로 자리 잡았다. 국방헬프콜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과 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관으로 구성된다. 국방헬프콜 상담사들은 심리상담 전문가로 상담을 요청하는 군 장병의 심리적 안정과 민원 접수를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행정관과 의논을 거쳐 조사기관으로의 이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방헬프콜의 신고·상담 건수는 2014년 17,258건에서 2020년 58,378건으로 급증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2014년 개소 시 13명이었던 전문상담관은 2019년 7월 1일 21명으로 증원되어 최대 10명까지 동시 전화 응대를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다.

국방헬프콜 행정관은 집단면접에서 국방헬프콜의 상담 건수가 증가한 이

유로 홍보 덕분에 국방헬프콜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한 것, 기억하기 좋은 1303번이라는 단일 전화번호를 운영하는 것,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까지 상담 채널을 다변화한 것 등을 들고 있다.¹⁵⁾

국방헬프콜의 주요 상담 내용은 ① 병영생활 고충상담, ② 군범죄·성폭력 신고·상담, ③ 방위사업비리 신고·상담이지만 휴가 일수나 위수지역 관련 문의 등 단순 민원도 포괄하고 있다.

나. 군인권지킴이

군인권지킴이는 2015년 2월 2일 설치된 군 인권 상담·진정 창구로 각 군에서 인트라넷 게시판으로 운영되던 인권상담센터를 인터넷으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개편한 시스템이다. 기존의 인권상담센터는 인트라넷으로만 접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인 컴퓨터가 없는 일반 병사들은 이용이 어려웠으나 개편 이후에는 인터넷으로도 접속이 가능해 일반 병사뿐만 아니라 군 장병의 부모와 지인 등도 상담이 가능해졌다.

군인권지킴이는 「군 인권업무 훈령」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 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인터넷 또는 인트라넷을 통한 인권상담 및 진정, 병영생활상담, 인권모니터단, 영창적법성심사, 인권교육 운영 등 장병 인권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 및 각 군 통합시스템인 군인권지킴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인권상담관은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전자우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권침해, 차별행위, 성희롱 등 인권과 관련된 문제에 관해 상담을 실시하며 상담한 내용은 군인권지킴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제40조),

군인권지킴이 신고·상담을 담당하는 인권상담관은 법무관으로 사단 이상의 부대에 배치된다. 2021년 기준 인권상담관 수는 총 258명이며, 이 중 육군은 157명, 해군은 40명, 공군은 38명, 국방부는 23명이다.¹⁶⁾

15) 국방부 국방헬프콜 담당관 면접은 2020년 10월 16일 10시에 실시되었다.

3. 군 인권교육 제도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도 시행되고 있다. 군 인권교육은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으며 2014년 8월 14일 「군 인권업무 훈령」 개정 이후 더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동법 제7조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군 내 인권정책에 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인권교육을 중장기적으로 실행하도록 했다. 5개년 인권정책 종합계획은 군 인권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분야별·과제별 추진계획을 명시해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군 인권교육의 목표는 군인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인식하게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병영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있다(제12조). 군 인권교육의 주요 내용은 ① 군인에게 보장되는 인권 및 기본권의 범위와 이에 따른 의무, ② 인권보호 모범 및 침해 사례, ③ 인권침해 시 권리구제 제도의 구체적 이용방법, ④ 인권정책 및 규정의 이해, ⑤ 교전 시 인권보호의무, ⑥ 성적소수자 인권보호 등이다(제18조).

교육 대상은 장병과 군무원이며, 병, 간부, 인권교관, 인권관련 업무종사자에 대해 각기 다른 인권교육을 실시한다(제14조). 일반 병사의 경우 대상이 광범위하므로 훈련병, 전입신병, 병 분대장·생활반장·으뜸병사, 그 밖의 병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제20조). 교육 시간은 훈련병은 1시간 이상, 전입신병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선임병 등은 분기 1회 1시간 이상, 병 분대장 등은 병 분대장 양성과정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그 밖의 병은 분기별 1회 1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21조). 장교, 준·부사관, 군무원 등 간부 대상의 인권교육도 분기별로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제21조).

16) 국방부 인권담당관과 2021년 11월 9일 유선 통화한 결과다.

Ⅲ. 군 인권 현황과 개선과제

1. 군 인권 제도 운영 현황

가. 신고·상담센터

(1) 국방헬프콜

2010년대 들어 국방헬프콜에 대한 홍보가 강화되고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용자 수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표 1] 국방헬프콜 신고·상담 추이

(단위: 건)

| 구분 | 성폭력 | 군범죄 | 병영생활 고충상담 | 계 |
|------|-----|-----|--------------|--------|
| 2014 | 93 | 335 | 16,830 | 17,258 |
| 2015 | 58 | 272 | 40,152 | 40,482 |
| 2016 | 52 | 190 | 57,748 | 57,990 |
| 2017 | 44 | 270 | 63,835 | 64,149 |
| 2018 | 74 | 187 | 61,194 | 61,455 |
| 2019 | 56 | 168 | 48,708 | 48,932 |
| 2020 | 29 | 110 | 58,239 | 58,378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p. 125-126;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9.3.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방헬프콜 신고·상담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17,258건이었던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 58,378건으로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자면 해마다 증감의 차이는 있으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등) 건수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2014년의 93건은 단순 문의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며, 2015년 이후 단순 문의 비중이 급감했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연도별 건수 추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또 2020년에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군인 간 접촉이 제한되었던 탓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군범죄 신고·상담 건수(폭행·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등)는 동기간 동안 335건에서 110건으로 감소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복무 부적응, 이성문제, 정신건강, 가정 문제, 자살 충동 등)은 2014년 16,830건에서 크게 늘어 연간 4만~6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신고·상담자 중에는 일반 병사가 가장 많았다. 일반 병사는 2014년 92.68%에서 2017년 85.19%, 2018년 81.60%, 2019년 76.24%로 신고·상담 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했다.¹⁷⁾ 반면 부사관과 장교의 전체적인 신고 비중은 낮지만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일례로 폭행·가혹행위의 경우 2014년에는 부사관과 장교의 신고·상담 건수가 0건이었으나 2017년 11건, 2018년 18건, 2019년 9건으로 조금씩 증가했다.¹⁸⁾

신고·상담자를 군별로 보면 육군의 경우 2014년 11,536건에서 2020년 31,399건, 해군은 986건에서 4,229건, 해병대는 498건에서 2,738건, 공군은 907건에서 3,398건, 국방부 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직이라 한다)은 810건에서 1,980건, 민간은 1,337건에서 11,385건, 미상이 1,165건에서 3,000건으로 모든 부분에서 증가했다.¹⁹⁾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민간

17)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28.

18) 위의 글.

인의 신고·상담 건수로 동기간 동안 약 8.5배 증가했는데, 조사본부 담당관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들의 신고나 군 관련 정보를 찾는 민간인들의 이용이 증가한 데 힘입은 것이다.

[표 2] 국방헬프콜 성폭력 신고·상담 추이

(단위: 건)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성희롱 | 15 | 17 | 19 | 9 | 5 | 5 | - |
| 성추행 | 13 | 34 | 27 | 29 | 50 | 36 | 19 |
| 성폭행 | 4 | 5 | 6 | 4 | 8 | 8 | 1 |
| 성매매(기타) | - | 1 | - | 1 | 4 | 2 | 9 |
| 상담/단순문의 | 61 | 1 | - | 1 | 7 | 5 | - |
| 계 | 93 | 58 | 52 | 44 | 74 | 56 | 29 |

설명: 2020년부터 성희롱과 성매매가 기타 항목에 포함되었음. 괄호 안 분류는 2020년에 새롭게 변경된 것임.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27;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9.3.

국방헬프콜의 성폭력 관련 신고·상담은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성매매, 단순 문의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신고·상담 건수는 2014년도 이후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례로 성희롱과 관련된 신고와 상담 건수는 2014년 15건에서 증가했다가 2019년 5건으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행과 관련된 신고·상담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 상세 자료는 [부록 1]을 참고한다.

[표 3] 국방헬프콜 군범죄 신고·상담 추이

(단위: 건)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폭행 | 41 | 116 | 102 | 189 | 163 | 191 | 57 |
| 가혹행위 | | | | | | | 19 |
| 병영부조리 (방위사업비리) | 205 | 130 | 52 | 60 | 9 | 27 | 2 |
| 군용물·경제 (경제) | 3 | 6 | 25 | 13 | 4 | 13 | 8 |
| 기타신고 및 상담 (기타) | 86 | 20 | 11 | 8 | 11 | 27 | 24 |
| 계 | 335 | 272 | 190 | 270 | 187 | 258 | 110 |

설명: 2020년에 폭행, 가혹행위, 방위사업비리, 경제, 기타로 분류 변경이 있었음. 괄호 안 분류는 2020년에 새롭게 변경된 것임.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2;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1.9.3.

군범죄 신고·상담은 2019년까지 폭행·가혹행위, 병영부조리, 군용물·경제, 기타로 구분되었으며 2020년에 유형 구분이 수정되었다. 폭행이나 가혹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은 2014년 41건에서 2019년 191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86건으로 다시 감소했다. 관련 건수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지 않은 것에 대해 군 인권 상황이 크게 나아진 바가 없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군 장병이 스스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피해에 대해 구제받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국방헬프콜 행정관은 최근 일반 사회와 군 인권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었기 때문에 후자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²⁰⁾ 병영부조리 관련 신고는 2014년

20) 국방헬프콜 담당자 인터뷰는 2020년 10월 16일에 실시되었다.

205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급감했다. 병영부조리의 사례로는 일부 부대에 서 젓가락 등 특정 식기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나 다른 부대원들을 기상시키기 위해 일부 계급 군인들의 기상 시간을 앞당긴 것들을 들 수 있다.

[표 4] 국방헬프콜 병영생활 고충 신고·상담 추이

(단위: 건)

| 연도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복무 부적응 | 5,925 | 13,155 | 23,158 | 24,363 | 23,514 | 14,627 | 15,823 |
| 이성문제 | 1,448 | 3,061 | 3,201 | 1,851 | 1,559 | 310 | 231 |
| 보직·진로 | 1,102 | 2,183 | 3,478 | 3,102 | 2,279 | 1,051 | 155 |
| 인권침해 | 760 | 1,592 | 2,532 | 3,767 | 4,098 | 4,472 | 4,181 |
| 정신건강 | 1,244 | 1,310 | 1,873 | 1,966 | 1,697 | 1,258 | 1,171 |
| 가정 | 190 | 320 | 512 | 520 | 465 | 273 | 214 |
| 성 문제 | 263 | 332 | 408 | 461 | 518 | 431 | 350 |
| 자살 충동 | 214 | 311 | 507 | 692 | 893 | 906 | 747 |
| 중독 | 22 | 104 | 103 | 76 | 68 | 53 | 22 |
| 부채·경제 | 17 | 72 | 75 | 86 | 48 | 146 | 50 |
| 기타 | 5,645 | 17,712 | 21,901 | 26,951 | 26,058 | 25,181 | 35,295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29;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1.9.3.

병영생활 고충상담 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은 복무 부적응, 이성문제, 보직·진로, 인권침해, 정신건강, 가정, 성 문제, 자살 충동, 중독, 부채·경제 문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첫째, 인권침해에 관한 신고·상담이 2014

년 760건에서 2020년 4,181건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 장병들이 모욕 등을 당했을 때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 군인복무기본법 등 법률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둘째, 자살 충동 상담도 2014년 214건에서 2020년 747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과 2020년 자살 건수는 67건에서 42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는데, 이에 대해 국방헬프콜 담당관은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군 장병들이 국방헬프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태에 대해 상담함으로써 자살을 실제 실행하는 단계까지 가는 경우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즉 국방헬프콜 등 신고·상담 채널이 군 장병의 심리적·물리적 난관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기타 건수도 2014년 5,645건에서 2020년 35,295건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병사들의 외출·외박 위수지역 등 군 생활 관련 정보 문의 등과 관련된 것으로 군 병사들의 병영생활 개선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상담 경로에도 변화가 있었다. 2016년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신고와 상담 건수가 더 많았으나 최근에는 전화 상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일례로 2014년 전화 상담 건수는 7,670건, 온라인 건수는 9,588건이었으나 2020년 전화는 39,053건, 온라인은 19,325건으로 전화는 약 5배, 온라인은 2배 좀 넘게 증가했다.²¹⁾

이에 관해 국방헬프콜 담당관은 인터넷의 경우 익명성이 더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화는 상담요청자와 상담관이 대화를 나누는 등 양방향 소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전화를 통한 신고나 상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이유로는 2019년 4월부터 일

21)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9.3. 상세 자료는 [부록 1]을 참고한다.

부 부대 군 병사들의 일과 시간 외 핸드폰 사용이 시범 운용되고 2020년부터 7월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핸드폰을 통한 상담과 신고가 대폭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담당관에 따르면 전화 상담 비중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²²⁾

(2) 군인권지킴이

군인권지킴이는 국방헬프콜에 비해 신고·상담 건수는 적지만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육군 인권존증센터, 해군 인권센터, 공군 인권과, 해병대 인권과 등 각 군과 부대 등에 별도 설치되어 있어 상황에 맞게 운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기할 만한 점은 육·해·공군별로, 또 계급별로 신고·상담 건수의 추이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표 5] 군인권지킴이 신고·상담 추이

(단위: 건)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육군 | 634 | 428 | 717 | 1,200 | 964 | 2,050 |
| 해군· 해병대 | 99 | 83 | 89 | 75 | 440 | 83 |
| 공군 | 138 | 15 | 146 | 145 | 167 | 196 |
| 국방부· 국직부대 | 112 | 157 | 127 | 125 | 120 | 172 |
| 계 | 983 | 683 | 1,079 | 1,545 | 1,691 | 2,699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11.9.

22)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담당자 면접은 2020년 10월 16일 2시 반에 실시되었다.

군인권지킴이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표 5]과 같이 증가 추세를 보였다. 육군은 2015년 634건에서 2020년 2,050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방부 담당자에 따르면 2020년도의 건수 급증은 군 병사들의 일과 외 시간 핸드폰 사용 허가로 전화 상담이 증가한 것과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금지 등에 대한 불만 증가 등으로 인한 것이다.

육군 군인권지킴이 신고·상담을 내용별로 보면 폭행·가혹행위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폭언 및 모독, 병영생활 고충, 법률상담, 징계상담은 증가했다.²³⁾ 신고·상담자를 계급으로 분류했을 경우 육군 병사의 신고·상담 건수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300건 안팎을 유지했다. 준·부사관과 장교의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이는 육군 장교와 준·부사관도 인권침해에 대한 고충을 적극 토로하는 경향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군·해병대의 경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9년에 440건으로 잠시 급증했는데 해군 인권센터 담당자는 2019년에 그간의 누락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²⁴⁾ 신고·상담 내용을 보면 병영생활 등 비물리적인 인권침해 유형에 대한 고충은 소폭 증가했으며 폭행 및 가혹행위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했다.²⁵⁾ 신고·상담자를 계급별로 보면 해군·해병대 병사의 상담은 다소 감소했으나 준·부사관과 장교의 신고·상담 건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공군의 신고·상담 건수는 소폭 증가했다. 국방부 인권과 담당자는 공군

23) 상세 자료는 [부록 2]을 참고한다.

24) 해군 인권센터 법무관과 2021년 9월 16일 유선 통화한 결과다.

25) 상세 자료는 [부록 3]를 참고한다.

장병들은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군 장병이 개인 이메일을 갖고 있었으며 인트라넷 접근이 다른 군보다 용이한 편이었기 때문에 더 신고·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²⁶⁾ 상담 내용을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상담 건수는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폭언 및 모독, 병영생활 고충상담, 인권침해 기타 사항, 일반생활, 법률, 인사 상담은 증가했다.²⁷⁾ 국방부 소속 군인권지킴이 담당자는 일반생활과 법률 상담의 경우 군 장병 자신의 상황이나 문제가 기본권 침해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문의하거나 법에 따른 기본권을 확인하기 위한 상담 등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²⁸⁾ 계급별로 보면 장교의 신고·상담 건수는 증가한 반면, 일반 병사는 소폭 감소했다. 즉 공군 역시 자신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받고자 하는 장교와 준·부사관의 상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국방부·국직부대에 접수된 신고·상담 건수도 2015년 112건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0년 소폭 증가했다. 내용을 보면 폭행 및 가혹행위와 휴식권 관련 신고는 줄었으나 폭언 및 모독, 인권침해, 법률 상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²⁹⁾ 신고·상담자를 계급별로 보면 병사들의 신고·상담은 다소 감소했으나 장교와 준·부사관은 증가했다.

군인권지킴이시스템에 접수된 신고와 상담들은 필요한 경우 진정 조치 대상이 되고 있다. [표 6]은 육·해·공군에 접수된 건수 중 진정 조치된 건수 추이에 관한 것이다.

26) 국방부 인권과 담당자와 2021년 9월 16일 유선 통화한 결과다.

27) 상세 자료는 [부록 4]를 참고한다.

28) 군인권지킴이 담당자 인터뷰는 2020년 10월 16일 실시되었다.

29) 상세 자료는 [부록 5]를 참고한다.

[표 6] 군인권지킴이 진정 조치

(단위: 건)

| 연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국방부 | 11 | 23 | 24 | 32 | 12 | 41 |
| 육군 | 3 | 18 | 25 | 29 | 31 | 60 |
| 해군·해병대 | 5 | 3 | 4 | 7 | 7 | 8 |
| 공군 | 0 | 7 | 1 | 5 | 5 | 2 |
| 계 | 19 | 51 | 54 | 73 | 55 | 111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9.3.

군인권지킴이시스템 신고·상담 건수 중 진정 조치된 건수는 2015년 19건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0년 111건으로 증가했다. 군별로 보면 진정 조치 건수는 육군과 해군에서 증가세를 보였다. 육군의 진정 조치 건수는 2015년 3건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했으며 해군은 2015년 5건에서 다소 감소했다가 2017년부터 점차 늘어나고 있다.

나. 군 인권교육

군 인권교육은 군 장병으로 하여금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인권이 있음을 인식시킴으로써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방지해줄 수 있다. 또 인권침해에 대한 기준을 익힘으로써 자신이 입은 피해가 인권침해에 해당하는 지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000년대 중반에 시작된 군 인권교육은 2010년대 들어 인권업무 종사자³⁰⁾와 간부급, 일반 병사를 대상으로 더 적극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의

30) 인권업무 종사자란 ① 의무병과의 군의장교, 간호장교 등, ② 「군사법원법」에 따른 검찰관, 검찰수사관, 군 사법 경찰관 등, ③ 군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교정업무 종사자, ④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 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인권교육을 받아야

장교, 검찰관, 교정업무종사자,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등의 인권업무 종사자는 대면 방식의 인권교육을 받으며, 부사관 이상의 간부 및 국방부 공무원은 사이버 인권교육과 함께 부대 내 대면·비대면 인권교육을 이수한다.

[표 7] 군 인권교육 현황

(단위: 명)

| 연도 |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 | 사이버 인권교육 | 계 |
|------|-------------|----------|--------|
| 2012 | 268 | 6,392 | 6,660 |
| 2013 | 244 | 10,127 | 10,371 |
| 2014 | 349 | 15,885 | 16,234 |
| 2015 | 1,094 | 13,715 | 14,809 |
| 2016 | 913 | 11,216 | 12,129 |
| 2017 | 1,073 | 7,591 | 8,664 |
| 2018 | 908 | 6,268 | 7,176 |
| 2019 | 930 | 6,878 | 7,808 |
| 2020 | 120 | 20,744 | 20,864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p. 221-222;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9.3.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권업무 종사자와 간부급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수료자는 2012년 총 6,660명에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³¹⁾ 이 중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은 2012년 268명에서 계속 증가했다. 2010년대 중반에

한다고 판단한 업무 분야 종사자 등을 의미한다.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224.

31) 상세 자료는 [부록 6]을 참고. 2020년에는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은 120명으로 급감하고, 사이버 인권교육은 20,744명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교육이 제한된 특수 상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군 인권교육 수료자 수가 증가한 것은 2014년부터 국방부와 인권위에서 인권교관 대상 교육을 확대·집중 편성한 결과다. 또 군 인권 개선을 위해 기존의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도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하는 등의 조치로부터 영향받은 부분도 있다. 일례로 2012년에는 의무사령부 인원, 2013년에는 각 군의 의료업무 종사자, 2014년에는 인권모니터단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과정이 추가 개설된 바 있다.³²⁾

2011년 7월 격오지 등에 근무하는 간부들이 손쉽게 수강할 수 있도록 개설된 사이버 인권교육은 2016년까지 사이버 인권교육 수강자 수가 증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교육과정 신설과 수강인원 증원, 운영 횟수 증가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5월부터 ‘군대와 인권’ 과정을 신설했으며, 각 과정당 1회 수강인원을 2011년 200명에서 2012년에 500명, 2020년 1,000명으로 증원했다. 또 각 교육과정의 운영 횟수도 2011년 연 5회에서 2013년 연 20회로 늘리는 등 인권교육을 더 많은 군인에게 실행하기 위한 인권교육 강화 방안들이 실행되었다. 2017년 이후에는 이수자 수가 재감소했는데 이는 인권교육이 약화된 것이 아니라 인권위 제안에 따라 인권 기초와 심화 과정을 ‘인권의 이해’로 통합해 과목을 재조정했기 때문이다.³³⁾

병사들은 2014년 8월 개정된 「군 인권업무 훈령」 제19조에 따라 인권교육을 받고 있다. 훈련병은 교육기간 중 1시간 이상, 전입신병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이내에 1시간 이상, 그 밖의 병사들은 분기마다 1회씩 1시간 이상의 인권교육을 받는다. 특히 병사들의 인권교육은 2020년까지 분기별 최소 30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1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1시간으로 증가해 인권교육이 강화되었다. 병사에 대한 인권교육 내용은 인권위와 국방부 협조 하에 준비되며 교육은 부대별 인권교관에 의해 실시된다. 인권교육 내용

32)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224.

33) 국방부 인권담당관실 담당자와 2021년 10월 6일 유선 통화한 결과다.

에는 군인복무기본법 등 인권과 국방헬프콜 및 군인권지킴이 등을 통한 자기 권리 구제 방법에 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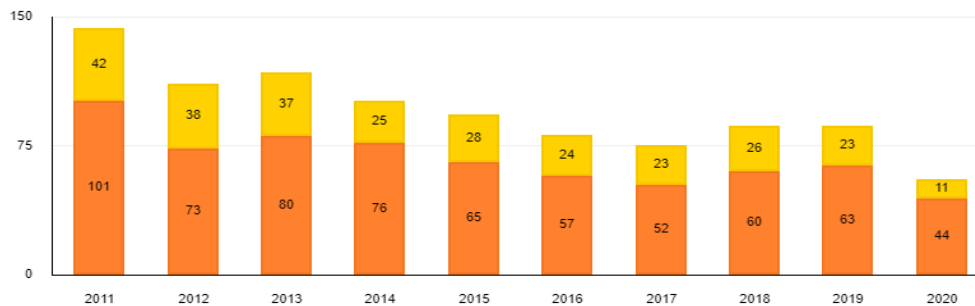
2. 군 인권 실태

가. 사망 사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대 들어 군 사망사고 건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1] 군 사망사고 추이

(단위: 명)



설명: 군기사고(주황색), 안전사고(노란색).

출처: 국방부 내부행정자료. e-나라지표(최종 검색일: 2021.4.1.),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그림 1]은 최근 10년간 군대 사망사고 추이를 보여준다. 군기사고와 안전사고 사망자는 2011년 143명이었는데 2019년 86명, 2020년 55명으로 감소했다.³⁴⁾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1년 101건에서 2020년 44건으

34) 군대 내 사망사고의 원인은 군기사고와 안전사고로 구분된다. 군기사고는 군인복무기본법, 「군형법」 등 각종 법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하여 발생한 사건·사고로

로 감소했는데 군기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며 군 인권침해 사례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러한 감소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8] 군 사망사고 원인

(단위: 명)

| 구분 | 군기사고 | | | | | 안전사고 | | | | | | | | |
|------|------|----|----|----|-----|------|----|----|----|----|----|----|----|-----|
| | 자살 | 총기 | 폭행 | 기타 | 계 | 차량 | 항공 | 폭발 | 추락 | 익사 | 화재 | 기타 | 계 | 총계 |
| 2011 | 97 | 4 | | | 101 | 18 | 5 | 1 | 5 | 2 | | 11 | 42 | 143 |
| 2012 | 72 | | 1 | | 73 | 17 | 1 | | 5 | 2 | 3 | 10 | 38 | 111 |
| 2013 | 79 | | | 1 | 80 | 15 | 2 | | 7 | 6 | | 7 | 37 | 117 |
| 2014 | 67 | 5 | 1 | 3 | 76 | 12 | | 1 | 2 | 3 | | 7 | 25 | 101 |
| 2015 | 57 | | | 8 | 65 | 6 | | 1 | 5 | 5 | | 11 | 28 | 93 |
| 2016 | 54 | | | 3 | 57 | 5 | 7 | 3 | 4 | | | 5 | 24 | 81 |
| 2017 | 51 | | | 1 | 52 | 10 | | 3 | 1 | 3 | | 6 | 23 | 75 |
| 2018 | 56 | | | 4 | 60 | 6 | 7 | 1 | 4 | 5 | 1 | 2 | 26 | 86 |
| 2019 | 62 | | | 1 | 63 | 9 | | 1 | 7 | 3 | | 3 | 23 | 86 |
| 2020 | 42 | | | 2 | 44 | 1 | | 2 | 5 | | | 3 | 11 | 55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02;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9.3.

[표 8]은 군 사망사고를 원인별로 분류한 것이다. 군기사고 중 자살 건수는 2011년 97건에서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42명으로 감소해 최저치를 기록했다. 폭행으로 인한 사고는 2012년, 2014년에 한 건씩 발생했으며

서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안전사고는 고의성이 없는 불완전한 인간의 행동과 물리적 상태 및 조건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초래한 사고를 뜻한다. 본고에서는 군기사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03.

총기 사고 역시 2011년과 2014년에 발생한 후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

[표 9] 군 자살률(10만 명당)

(단위: 명)

| 항목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
| 자해 사망 | 97 | 72 | 79 | 67 | 57 | 54 | 51 | 56 | 62 | 42 |
| 자살률 | 15.2 | 11.1 | 12.2 | 10.2 | 8.7 | 8.2 | 8.0 | 8.7 | 9.73 | 7.12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102;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1.9.3.

[표 9]는 군 병사 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감안해 연간 자살 건수를 10만 명당으로 재계산한 것이다. 이 자료로 보아도 2011년 10만 명당 15.2명이었던 자살 건수는 2013년 12.2명, 2019년 9.73명, 2020년 7.1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살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가 감소한 원인으로는 우선 군대 문화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자살에는 가족이나 이성문제, 우울감 등 개인적인 원인이 있지만 그 외 간부와 선임병의 인격적 무시나 횡포, 군대 부적응, 군대 내 계급질서로 인한 스트레스와 소외감 등 군 인권침해의 탓도 크다.³⁵⁾ 자살 건수 감소는 군 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 제기, 군인복무기본법 등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신고·상담 창구 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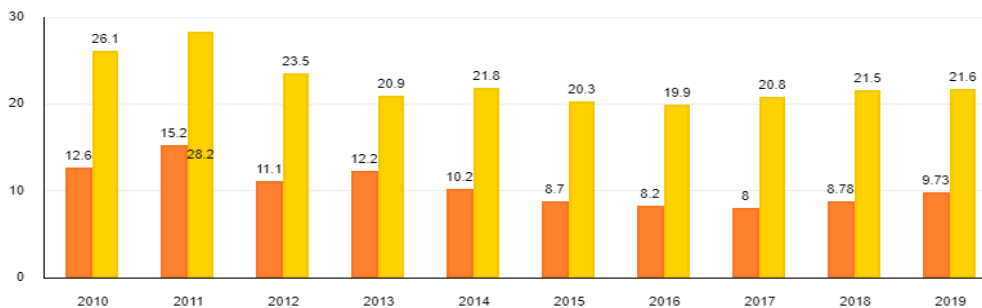
35) 군 자살원인에 대한 연구는 이남순, 「군병사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박사학위 논문, 2007; 정미경, 고기숙, 「군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4호, 2009, pp. 453-483; 정신영, 이동귀, 박현주, 「자살시도 병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pp. 113-133; 홍점동, 양난미, 「군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소외감, 욕구좌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 pp. 1423-1441 등을 참고한다.

성화, 군 인권교육 강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국방부 병영문화혁신팀 담당관은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으로 군 장병들에게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또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킴이시스템 관계자는 국방헬프콜이나 군인권지킴이 등과 같이 군 장병들이 자살 충동에 시달릴 경우 심리상담을 하거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많아진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도 자살 사망사고 건수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더 나아가 국방부는 인권교육이 세분화되고 더 빈번하게 실행되는 것도 자살률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자살의 위험이 있는 군 장병이 교육을 통해 자신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등을 이용할 수 있음을 알게 된 것도 도움이 되었다. 국방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군 인권센터와 같은 시민단체도 새로운 법률 시행, 신고·상담 창구의 활성화, 군 인권교육의 영향이 주효했다는 면에서 국방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했다.

[그림 2] 군인과 일반인의 10만 명 당 자살자 수 비교

(단위: 명)



설명: 10만 명 당 군인 자살자 수(주황색), 10만 명 당 일반인 자살자 수(노란색).

출처: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최종 검색일: 2021.9.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그러나 군기사고 사망자 수 감소가 오로지 군 인권 보장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2]는 10만 명당 군 자살률과 20-29세의 일반인 남자의 자살률을 비교한 것이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만 명 당 군 자살자 수는 20대 일반 남성과 비교했을 때 2013년 58.37%, 2017년 38.46% 등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군 자살률이 일반 국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한다.³⁶⁾

하지만 학업과 취업 문제에 직면한 일반 20대 남성과 식사부터 훈련, 취침까지 통제된 생활을 하는 군 장병과의 자살률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병영생활은 자유를 통제받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지만 군 장병들은 쉽게 자살을 시도하기 어려운 단체생활을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2010년대 중반에 20대 일반 남성들의 자살률도 감소 추세였던 것을 감안하면 단순히 군 인권 제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군 자살률이 감소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

나. 성범죄

성범죄 입건 수는 군이나 계급에 따라 소폭 감소하는데 그치거나 오히려 증가한 경우도 있다. 2016년 대비 2020년 군 장병 간 강간과 추행 등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성범죄 입건 수 추이는 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표 10]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성범죄 입건 수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 |
|------------|------|-------|------|------|------|-----|
| 성범죄 입건수 | 873 | 1,023 | 913 | 907 | 884 | 9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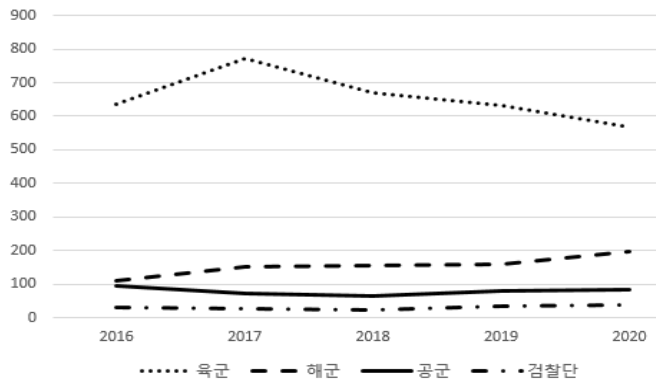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36) E-나라지표, 군 사망사고 현황(최종 검색일: 2021.9.1.),

<https://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01>.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성범죄(강간, 추행 등) 입건 수 추이를 보면 2016년 873건에서 2020년 884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단 2017년 1천 건 이상 증가했다가 서서히 감소한 것으로 군 성범죄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그림 3] 군별 성범죄 입건 수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함.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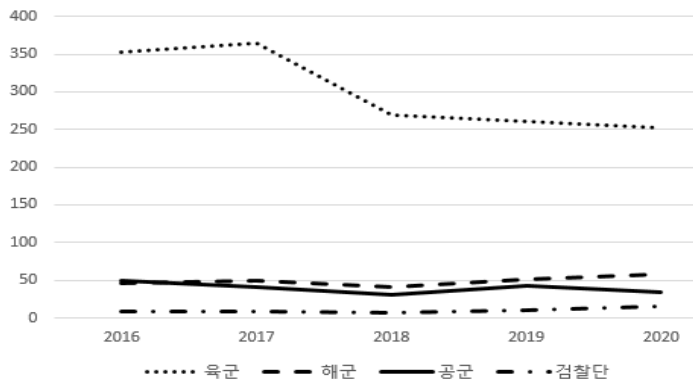
군별로 보면 해군의 성범죄 입건 수가 2016년 110건에서 2020년 197건으로, 검찰단도 32건에서 37건으로 증가했다. 육군은 2016년 635건에서 증가했다가 2020년 568건으로, 공군은 동기간 동안 96건에서 82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군 인권 보장을 위해 여러 제도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군 성범죄가 크게 감소하지 않은 이유로 군대 내 성범죄 진상 조사 미흡과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처벌로 인해 군 성범죄가 줄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³⁷⁾ 가해자

37)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일파만파... 끊이질 않는 군 성범죄”, 「매일경제」, 2021.6.2.(최종 검색일: 2021.11.24.),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6/531631>>; “[사설] 드러난 군 성추행 부실수사·2차 가해 솜방망이 처벌 안 된다”

중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처벌 역시 약하기 때문에 성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조사 미흡과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구제 요청에 대해 불신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들이 전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성범죄 입건 수 증가 원인으로 들 수 있다.³⁸⁾ 기존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와 부실한 진상 조사 등에 대한 우려로 피해자들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4] 군별 성범죄 기소 건수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함.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2021.5.10.

경향신문, 2021.7.9.(최종 검색일: 2021.11.24.), <<https://m.khan.co.kr/opinion/editorial/article/202107092021005#c2b>>; 오예진, “여성단체, ‘해군 성추행 사망’에 “가해·협박자 엄중 처벌해야””, 「연합뉴스」, 2021.8.17.(최종 검색일: 2021.11.24.), <<https://www.yna.co.kr/view/AKR20210817075300530>>.

38) 이러한 기류는 2000년대 초반부터 감지되기 시작했다. 권인숙, 『군대 성폭력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4.2., p. 96.

[그림 4]는 입건 후 기소된 성범죄 건수 추이를 보여준다.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총 성범죄 기소 건수는 2016년 대비 2020년 21.06% 감소했다. 그러나 기소 건수 추이는 군별로 차이가 있었다. 육군과 공군은 기소 건수가 감소한 반면 성범죄 관련 입건 수가 증가했던 해군과 검찰단은 기소 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표 11] 군별 성범죄 기소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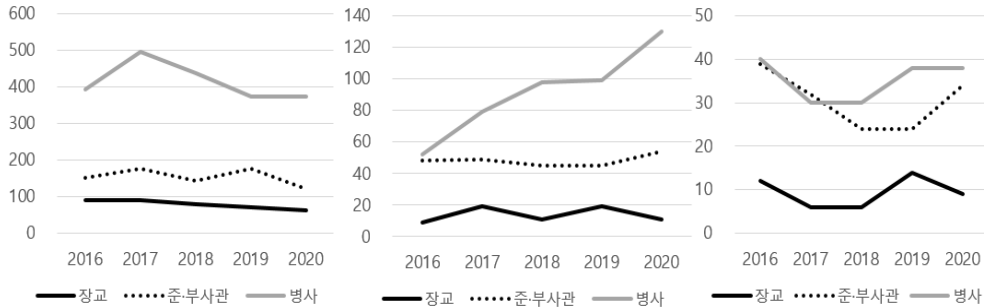
(단위: %)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 |
|-----|-------|-------|-------|-------|-------|-------|
| 육군 | 55.43 | 47.28 | 40.24 | 41.30 | 44.37 | 45.72 |
| 해군 | 41.82 | 32.45 | 26.28 | 32.50 | 29.44 | 32.50 |
| 공군 | 51.04 | 56.16 | 49.21 | 51.85 | 42.68 | 50.19 |
| 검찰단 | 28.13 | 33.33 | 30.43 | 32.35 | 40.54 | 32.96 |
| 평균 | 44.10 | 42.31 | 36.54 | 35.38 | 39.26 | 37.75 |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함.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군 성범죄의 입건 수 대비 기소 건수 비율을 보면 2016년 전체 성범죄 평균 기소율은 44.1%에서 2020년 39.26%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들어 실제 재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 비중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역으로 보면 기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입건 대상이 되는 사건 수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로 군 인권을 침해당한 군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신고하고 경우가 늘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해군의 경우 입건 수와 기소 수가 모두 증가해 성범죄 발생 건수가 높아지고 있지만 기소율 자체는 감소하고 있어 그 증가폭에 비해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 계급별 성범죄 입건 수



설명: 왼쪽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한 것임.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함.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그림 5]는 성범죄 입건 수를 군과 계급별로 구분해 추이를 살펴본 것이다. 특기할만한 점은 일부 군의 특정 계급의 입건 수가 증가 추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육군의 경우 병사 입건 수는 2017년 497건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뒤 점차 감소했으며 장교 입건 수도 2017년 89건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해군의 경우 병사 입건 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에는 52건에 불과했으나 2018년 98건, 2020년 130건을 기록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2016년에는 병사와 부사관의 성범죄 입건 수가 비슷했으나 이후 병사들의 성범죄 입건 수가 급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해군 담당자는 징계 처리만 하던 병사의 성범죄에 대해 2010년대 중반부터 입건 비중을 늘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외에도 폐쇄적인 선상 생활을 하던 해군 장병들이 군 인권 제도 개선에 따라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증가한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³⁹⁾ 반면 공군 장병들은 증감을 반복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39) 해군 담당자와 2021년 5월 유선 통화한 결과다.

다. 폭행·가혹행위·모욕

폭력 범죄 중 폭행은 피해자 신체에 대한 신체나 물건을 이용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하며 가혹행위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이나 인격적 모독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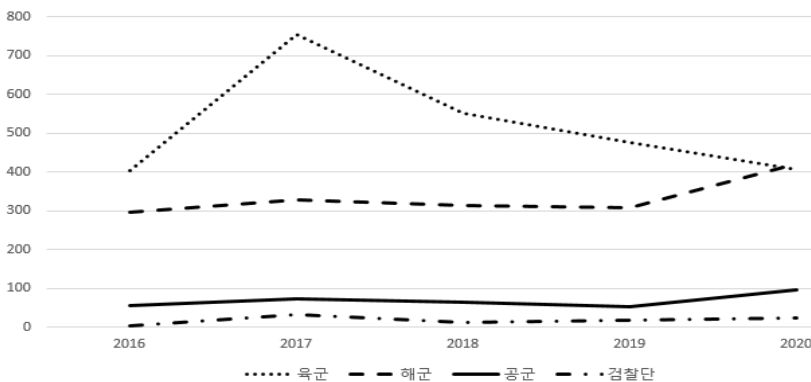
[표 12]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폭행 입건 수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 |
|--------|------|-------|------|------|------|-------|
| 폭행 입건수 | 755 | 1,185 | 939 | 851 | 946 | 935.2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최근 5년간 폭행 입건 수는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총 폭행 입건 수는 2016년 755건에서 2017년 1,185건으로 증가했다가 감소해 2020년 946건을 기록했다. 단순히 2016년과 2020년 건수를 비교할 경우 25% 정도 증가한 것이며, 최저 건수를 기록한 2019년도 851건으로 폭행으로 인한 범죄가 줄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6] 군별 폭행 입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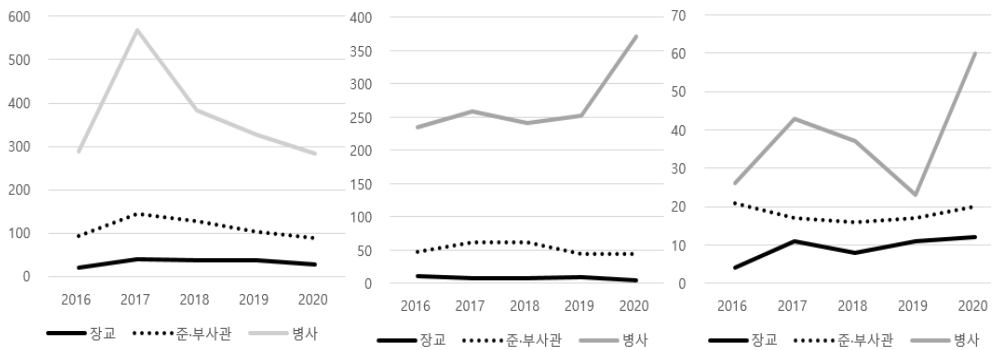


설명: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한 수치임.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을 재구성.

구체적으로는 육군은 2016년 403건에서 2017년 753건으로 증가했다가 2020년 407건으로 감소해 최근 5년 사이 큰 변화는 없었다. 해군은 2016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 421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도 2016년 54건에서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0년 96건으로 증가했다.

[그림 7] 계급별 폭행 입건 수



설명: 왼쪽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한 것임.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을 재구성.

5년간 폭행 입건 수를 군별, 계급별로 구분하면 육군의 경우 모든 계급의 입건 수가 잠시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있다. 장교와 준·부사관의 폭행 입건 수는 2017년 증가했다가 점차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병사도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2016년 287건에서 2017년 567건으로 증가한 후 2020년 282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해군과 공군 병사의 입건 수는 증감을 반복하다가 2020년 급증하는 양상을 보였다. 해군 병사의 경우 2016년 235건에서 매년 점차 증가해 2020년에는 371건으로 급증했으며, 공군 병사는 2016년 26건 이후 증감을 거듭하다가 2020년 60명으로 급증했으며, 공군 장교의 경우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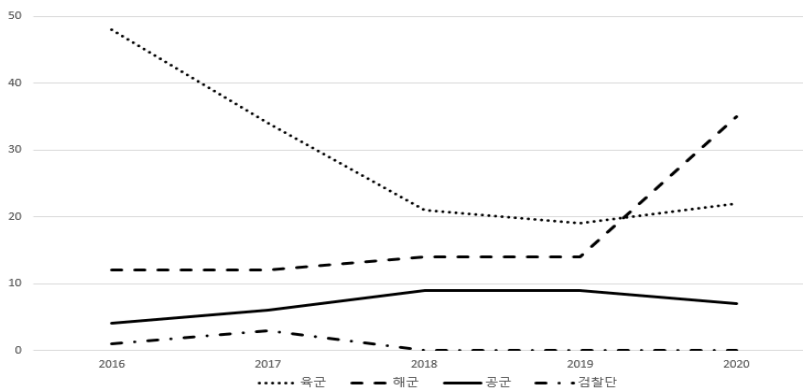
[표 13]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가혹행위 입건 수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 |
|-------------|------|------|------|------|------|----|
| 가혹행위 입건수 | 65 | 55 | 44 | 42 | 64 | 54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가혹행위는 일명 머리박기나 오리걸음 등 군 장병 간의 비접촉 인권침해 행위를 포함한다.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가혹행위와 관련된 총 입건 수는 최근 5년간 큰 변화가 없었다. 세부적으로 볼 경우 2016년 이후 점차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 급증해 결국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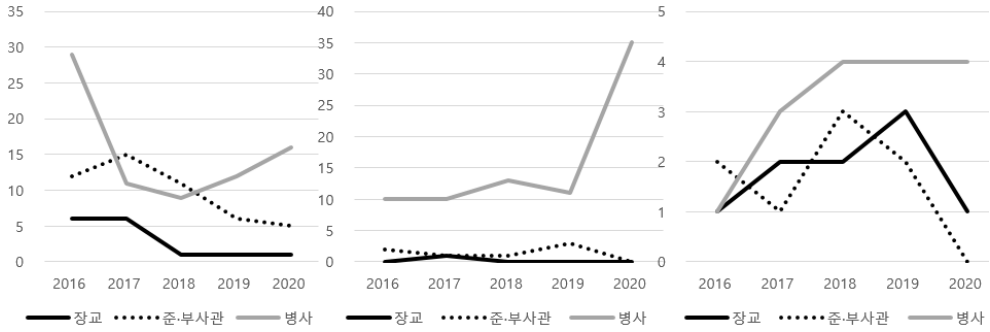
[그림 8] 군별 가혹행위 입건 수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함.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군별로 보면 가혹행위 입건 수 추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육군 가혹행위 입건 수는 2016년 48건을 기록한 이래 2020년 반등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공군은 2016년 4건에서 증가했다가 2020년 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해군은 2016년 12건에서 2019년 14건, 2020년 35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해군 내 가혹행위 실태가 크게 개선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계급별 가혹행위 입건 수



설명: 왼쪽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한 것임.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을 재구성.

[그림 9]는 가혹행위 입건 수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군별, 계급별로 구분한 것이다. 육·해·공군의 장교와 준·부사관은 증감을 거듭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병사의 경우 육군은 2019년, 해군은 2018년과 2020년, 공군은 2016년 이래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임병이 가해자가 되고 후임병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병사의 가혹행위 입건 추이를 통해 병사 간 가혹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14]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모욕 입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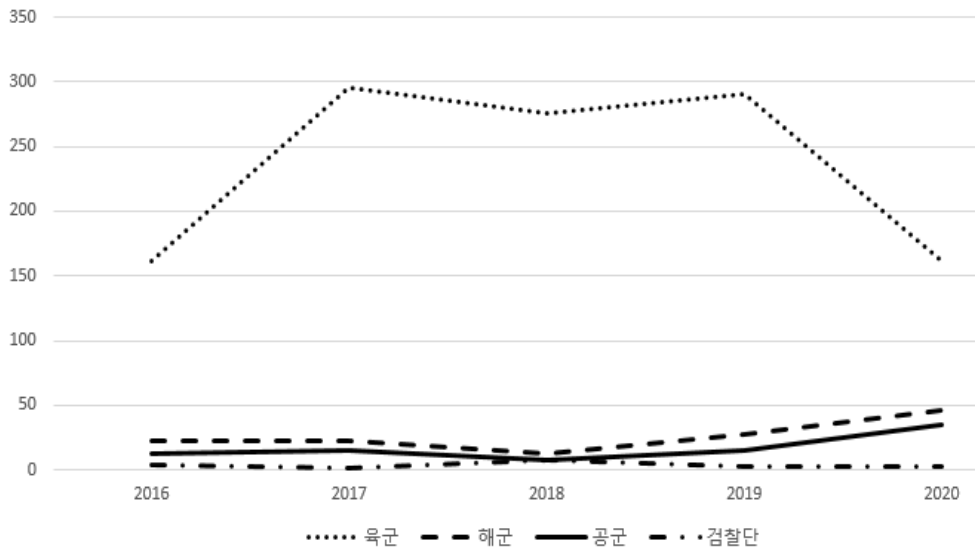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평균 |
|--------|------|------|------|------|------|-----|
| 모욕 입건수 | 201 | 334 | 304 | 336 | 245 | 284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육·해·공군과 검찰단의 모욕으로 인한 총 입건 수는 2016년 이후 증가했

다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2017년 334건과 2019년 336건으로 최대 건수를 기록한 뒤 2020년 급감한 수치로 군 내 모욕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줄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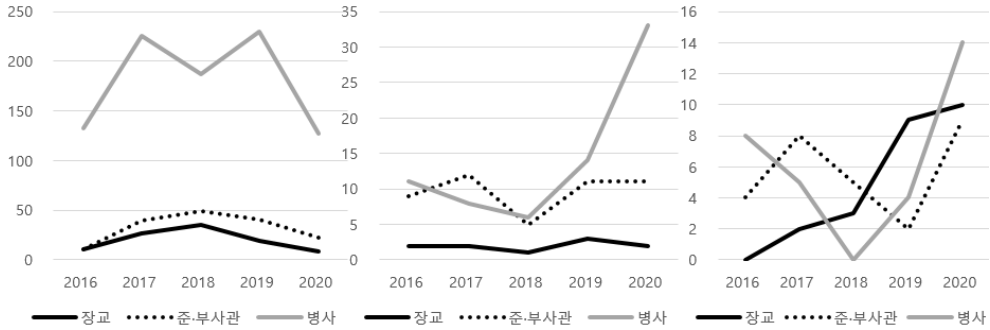
[그림 10] 군별 모욕 입건 수



출처: 다음 자료를 재구성함.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군별로 보면 육군의 모욕 입건 수는 2017년 296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에 급감했다. 특기할만한 부분은 해군과 공군으로 2016년 이후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해군은 2016년 23건에서 2018년에 13건으로 감소한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 46건을 기록했다. 공군의 모욕 입건 수 추이도 해군과 비슷하다. 2016년 13건에서 2018년 8건으로 감소했다가 2020년 35건으로 증가해 모욕으로 인한 입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 계급별 모욕 입건 수



설명: 왼쪽부터 육군, 해군, 공군. 해군은 해병대를 포함한 것임.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을 재구성.

모욕 관련 입건 수를 계급별로도 구분할 경우 육군 장교와 준·부사관, 병사는 증가했다가 최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해군 장교와 준·부사관은 증감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병사의 경우 2018년 6건에서 계속 증가했다. 공군의 경우 장교의 입건 수가 2016년 0건에서 2020년 1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등 장교의 모욕 가해 건수 증가가 두드러졌다.

라. 군 인권 인식 변화

2010년대 들어 군 인권 관련 법률 제정, 신고·상담센터 이용 증가, 인권 교육 활성화 등 군 인권 관련 제도 개선이 실행되면서 군 사망사고와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등 주요 인권침해 입건 수도 시기별, 군별, 계급별로 감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2]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257.

[그림 12]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반인들의 군 인권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다. 일례로 2019년 ‘국방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는 9월 9일부터 10월 7일까지 일반 시민 1,016명(남성 502명, 여성 51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⁴⁰⁾ 이 조사에 따르면 2015년에는 ‘군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매우 잘 보장됨+잘 보장되는 편임)고 보는 비율이 32.2%이었으며, ‘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잘 보장되지 않는 편임+전혀 보장되지 않음)고 답한 응답자는 21.2%로 두 응답 간 차이가 11%였다.

2018년부터 군 인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2018년 군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이다. 군 인권 보장에 대해 ‘군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매우 잘 보장됨+잘 보장되는 편임)고 답한 응답자는 2018년 42.3%, 2019년에는 45.2%를 기록했다. 반면 ‘군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잘 보장되지 않는 편임+전혀 보장되지 않음)고 답한 경우는 2018년 14.2%, 2019년 9.8%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40)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257.

[표 15] 군 인권 보장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단위: 명, %)

| 구분 | | 사례 수 | 매우 잘 보장됨 | 잘 보장되는 편임 | 보통 | 잘 보장되지 않는 편임 | 전혀 보장되지 않음 | 무응답 | | |
|------|------|-------|----------|-----------|------|--------------|------------|-----|-----|-----|
| 2018 | 성별 | 전체 | 1,011 | 1.5 | 40.8 | 40.4 | 12.7 | 1.6 | 3.1 | |
| | | 남성 | 502 | 1.6 | 40.7 | 39.2 | 14.8 | 2.0 | 1.8 | |
| | | 여성 | 509 | 1.4 | 40.9 | 41.5 | 10.6 | 1.2 | 4.5 | |
| | 연령 | 19-29 | 176 | 1.1 | 32.7 | 40.8 | 17.5 | 3.9 | 3.9 | |
| | | 30-39 | 171 | 1.1 | 30.0 | 45.8 | 19.1 | 1.7 | 2.2 | |
| | | 40-49 | 201 | 0.5 | 38.2 | 41.8 | 14.1 | 1.0 | 4.5 | |
| | | 50-59 | 203 | 2.0 | 44.6 | 41.1 | 8.4 | 1.5 | 2.5 | |
| | | 60- | 260 | 2.3 | 52.4 | 34.8 | 7.4 | 0.4 | 2.7 | |
| | 2019 | 성별 | 전체 | 1,016 | 3.0 | 42.2 | 41.1 | 8.7 | 1.1 | 3.9 |
| | | | 남성 | 502 | 3.4 | 45.5 | 37.6 | 9.5 | 0.8 | 3.2 |
| 여성 | | | 514 | 2.5 | 39.0 | 44.6 | 8.0 | 1.4 | 4.6 | |
| 연령 | | 19-29 | 176 | 2.3 | 30.2 | 46.6 | 14.7 | 0.0 | 6.2 | |
| | | 30-39 | 165 | 3.0 | 41.9 | 38.7 | 11.6 | 1.8 | 3.0 | |
| | | 40-49 | 198 | 2.0 | 41.7 | 41.8 | 10.4 | 0.5 | 3.6 | |
| | | 50-59 | 202 | 2.0 | 49.5 | 40.2 | 4.4 | 1.0 | 3.0 | |
| | | 60- | 275 | 4.8 | 45.1 | 39.2 | 5.2 | 1.8 | 3.8 |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19』, 2019.12.27, p. 229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 257.

[표 15]는 [그림 12]의 설문 응답자를 성별과 연령별로 구분한 것이다. 남성의 경우 군대 내 인권이 잘 보장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2018년 42.3%, 2019년 48.9%, 여성은 2018년 42.3%, 2019년 41.5%로 남성의 경우 상대적으로 군 인권에 대해 긍정적인 편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젊을수록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긍정적으로 대답하는 경향이 있었다. 20-30대의 부정적인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복무 전인 경우 군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가, 복무를 마친 경우에는 군 복무 시 겪었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병영문화가 개혁되기 전인 예전 군대 문화를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에 최근 군의 변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개선과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 시행, 신고·상담 센터 및 군 인권교육 활성화를 통해 여러 변화가 도출되었다. 전반적으로 군 장병들이 고충을 적극적으로 토로하는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했다. 내용 면에서는 성범죄나 폭력보다는 병영생활 관련 고충 상담이 증가했다. 계급별로는 일반적으로 가해자로 인식되었던 장교와 준·부사관의 피해에 대한 신고·상담 비중이 늘어났다. 소통수단 면에서는 최근 인터넷보다 전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군 인권교육 역시 시수와 내용의 개선에 따라 인권교육이 전보다 강화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성범죄, 폭행, 가혹행위, 모욕 관련 입건 수는 증가하거나 보합 수준을 유지해 크게 개선된 바를 찾기 어려웠다.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군 인권침해가 크게 나아지지 않았거나 군 장병들이 적극적으로 피해 구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군 인권을 추가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

가. 신고·상담 제도 개선

국방헬프콜이나 군인권지킴이 등과 같은 군 인권과 관련된 신고·상담 센터나 시스템은 군 장병들의 다양한 고충을 접수하고 있다. 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와 관련해 진정 조치를 취하는 등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군 인권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신고·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인권침해 가해자로 여겨졌던 장교와 준·부사관들의 고충 토로가 빈번해지면서 신고·상담 센터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첫 번째 개선방안은 신고·상담 센터의 통합이다. 현재 국방부 조사본부는 심리상담관으로 구성된 국방헬프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방부와 사단급 이상의 군 부대에는 법무관으로 구성된 군인권지킴이가 있다. 그 외에도 군에는 병영생활상담관, 성고충상담관, 양성평등상담관이 있으며 마음의 편지, 국민 신문고, 카톡 상담 등의 상담 채널을 통해 신고와 상담이 접수되고 있다. 군 장병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채널이 다양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지나치게 많아서 어떠한 신고·상담 채널이 있는지, 또 각 채널의 특징이 무엇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신고·상담 채널을 통합해 군 장병이 기억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시스템을 일부 통합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신고·상담관의 임무를 군 상황 변화에 맞추어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신고와 상담 내용이 비물리적, 비신체적인 피해 호소가 많아지고 상담 요청자도 장교와 준·부사관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신고·상담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고·상담 센터 운영 시 장교와 준·부사관의 상담을 전담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또 국방헬프콜의 경우 심리상담에 집중되어 있는데 최근 인사, 병영생활과 관련한 정보 요청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

기존 상담관에게 이와 같은 지식을 숙지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군 장병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 인권상담관과 관련해 계급별 고충 유형에 차이가 있음을 감안하여 상담관의 역할을 차별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신고·상담자 중 일반 병사는 감소하고 장교와 준·부사관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휘체계 약화를 우려하는 지휘관의 고충을 전담하기 위한 전문상담관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

나. 군 인권교육 개선

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개선책에 대한 요구됨에 따라 군 인권교육의 역할도 더 중요해지고 있다. 군 인권교육과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군 인권교육 내용 중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보완하고 군 인권 감수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2020년에도 국방부 인권교재에 부적절한 인권 표현들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⁴¹⁾ 일례로 구타 행위는 그 원인 제공자가 있다거나 운동을 하면 성범죄가 예방될 수 있다는 기술은 피해자 중심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또 「군 인권업무 훈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성 소수자의 인권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방부 인권교재에는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⁴²⁾ 더불어 인권 예방 및 피해 구제 조치 시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인권교육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간부와 전입신병의 인권교육 시수를 늘이는 방안도 있다. 간부는 분기별로 1회 1시간 이상 실시된다. 하지만 간부는 병영생활 통제권을 지닌 지휘관이라는 점에서 병사(분기별 1회 1시간)보다 더 많은 교육을 받을 필

41) 김치연, “구타 유발자·스포츠로 성욕해소?...”국군인권교재 바뀌어야”, 한국경제, 2020.12.29.

42) 위의 글.

요가 있다. 또 전입신병은 군 인권 지식이 부족하므로 인권교육 시수 조정을 통해 집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신병은 부대 전입 후 2개월 내 1시간, 이후 분기별 1시간 교육을 받으므로 1년분 교육 시간(4시간) 중 상당 부분을 전입 직후에 집중 배치해 군 인권 기초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군 인권교육을 담당하는 부대 인권교관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군 인권업무 훈령」 제19조에 따라 “부대 인권교관이 없을 경우” 인근부대 인권교관이나 외부 강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해당 군 내에서 인권교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그 중 인권교관 지정은 지휘관이 “생활 태도, 교수역량 등 인권교관으로서의 자질과 보직, 복무기간·연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지정된 자는 사이버 인권교육 전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단시간의 사이버 인권교육으로 인권교관에게 요구되는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 인권교관의 역량과 관심에 따라 인권교육의 질에 차이가 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인권교관 역량 강화를 위해 보다 대면교육 시수 증가 및 평가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 군인권보호관 설치

2021년 12월 9일 국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권위개정법안이라 한다)⁴³⁾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군인의 기본권 보장 및 기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 군인권보호관의 설치가 5년 간의 논의 끝에 결정되었다.

본래 군인권보호관은 2016년 시행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라 조직과 업

4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운영위원장 대안, 제안일자: 2020.12.8., 의안번호: 2113793).

무, 운영에 관한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제42조제1항). 그러나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도록 군인권보호관 신설이 지연되고 있었다. 그간 군인권보호관이 군 인권 제고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⁴⁴⁾ 군인권보호관 관련 법률을 신속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⁴⁵⁾

2017년부터 군인권보호관과 관련해 여러 발의안들이 제안되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견 때문이었다.⁴⁶⁾ 우선 군인권보호관의 소속 기관을 국가인권위원회로 할 것인지, 혹은 국회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 더 큰 쟁점은 불시 방문조사권, 자료요청권 등과 같은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에 통과된 인권위개정법안은 군인권보호관을 인권위 소속으로 설치한다. 군인권보호관은 차관급으로 인권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이 겸직하도록 하며, 인권위 사무처에 업무지원 조직을 둘 예정이다. 동법에 따라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은 방문조사권, 자료제출권, 사망 사건 시 입회권 등으로 정해진다. 군인권보호관은 방문조사 시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해당

44)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 업무의 종합적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도자료, 2017.8.25.

45) 군인권보호관 설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한다. 강현철, 「군 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 pp. 121-157.

46)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17.1.20., 의안번호: 2005214); 「군 인권특별보호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17.6.14., 의안번호: 200738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17.1.20., 의안번호: 2005203.);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0.11.3., 의안번호: 210490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0.11.3., 의안번호: 2104889);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0.11.3., 의안번호: 210490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제안일자: 2020.12.8., 의안번호: 2106208).

군부대 장에게 취지,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하고 방문해야 한다. 하지만 선통지 시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만 사전 통지한 다음 군인권보호관이나 인권위 의원이 직접 관련 군 부대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방부장관은 방문조사가 기밀사항이나 국가안위, 국가비상사태, 작전임무수행 지장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중단시킬 수 있다.

한편 군인권보호관의 권한에 대한 이견도 있다. 한 의원은 불시조사권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으며,⁴⁷⁾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는 선통지 후 방문 시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⁴⁸⁾ 또 국방부장관이 국가기밀 등의 이유로 군인권보호관의 방문조사를 거부할 경우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⁴⁹⁾

향후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하면 군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2년 7월 이후 군인권보호관이 시행되면 군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해 군인권의 실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47) 노윤정, “군인권보호관 설치법, 국회 운영위 통과”, KBS, 2021.12.2.

48) 박기완, “국방부 입김에 군인권보호관 조사 권한 축소”, YTN, 2021.11.30.

49)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국방부장관에게 ‘사전’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국방부장관이 방문조사 거부권한을 제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의견이 제기되었다. 국회운영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1.12., p. 5.

IV. 결론

2010년대 들어 윤일병 사건과 같은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군 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이 시도되었다. 우선 2016년 들어 군인복무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군 인권 개선을 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또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용이하게 신고나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킴이 등과 같은 신고·상담센터도 보다 많은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더불어 2014년부터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군 인권교육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등 군 인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변화가 시도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군 인권 보장이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국방통계연보』 및 국방부의 국회입법조사처 제출 자료 등 관련 통계 자료를 통해 인권침해 현황을 살펴보았다. 또 11명의 국방부 및 시민단체 군 인권 관련 담당자들을 집단면접했으며 추가로 전화 인터뷰 등을 실행했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인권침해 상황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실질적으로 자살·폭행 등 군 장병들의 사망사고 건수도 감소했다. 특히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군기사고 사망자가 동기간 동안 101명에서 44건으로 감소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군 장병들이 자신의 인권을 보장받고자 의지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배경으로는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에 군 기본권과 같은 인권 보장이 법적으로 명시되었던 것과 국방헬프콜, 군인권지킴이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가 늘어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헬프콜과 군인권지킴이 이용 건수도 증가했는데 이는 자신의 인권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구제받고자 하는 장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군 인권교육의 활성화도 군 인권·기본권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군 장병들은 인권교육을 통해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숙지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군 범죄 입건 수 등을 보았을 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800-1천여 건의 성범죄와 700-1,100여 건 폭행, 40-60여 건의 가혹행위, 200-300여 건 이상의 모욕 입건이 발생해 인권침해 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부 군과 계급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까지 목도되어 군 인권침해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통계에서 보듯 관련 군과 계급의 실제 범죄행위가 지속 혹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동시에 군 관계자나 시민단체의 의견과 같이 기존에는 신고나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건들이 최근 들어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피해 구제 요청과 군 및 사회의 인권 인식 제고로 인해 양성화된 측면도 있다.

향후 우리나라 군 인권 정책은 신고나 상담 등을 통해 구제 요청을 하는 군 장병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군 인권교육 등을 통해 군 인권침해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첫째, 군 인권 관련 신고·상담 채널 개선을 고려할 수 있다. 군 장병들이 기억하고 이용하기 쉽도록 신고·상담 센터를 통합하고, 장교와 준·부사관의 신고·상담 증가에 따라 병사 외 지휘관들의 상담도 원활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군 인권교육 제도의 개선·강화를 논의할 수 있다. 국방부 군 인권 교과서에 관해 누락된 성 소수자 부분을 보충하는 등 군 인권 감수성 강화를 검토할 수 있다. 또 병영생활을 총괄하는 간부와 병영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전입신병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인권교관 지정 시 역량 제고를 위한 조치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군인권보호관은 2016년 군인복무기본법에 의해 시행이 예정되었으나 5년째 설치가 지연되었다. 긴 논의 끝에 2021년 12월 9일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관한 인권위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 인권 제고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군인권보호관의 군 부대 방문 및 국방부장관의 군인권보호관 부대 중단권 등에 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향후 군인권보호관이 시행되면 군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구제 등과 관련해 군인권의 실질적인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군 인권은 향후 다양한 개선책을 통해 더 효과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 하지만 군인 역시 ‘제복 입은 시민’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의 인권 인식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군 인권 역시 근원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 인권 개선은 단시간에 이뤄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군 인권 인식과 보장 정책이 나아질 수 있도록 비단 군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노력이 함께 경주될 필요가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현철, 류성진, 『군인권보호관 제도에 관한 사전적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 연구, 2017.11.30.
- 강현철, 「군 인권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제33호, 2020, pp. 121-157.
-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 _____,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0.9.
- _____,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5.10.
- 김형래, 「메타(Meta)분석에 의한 병사 자살위험요인 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2권 제1호, 2016, pp. 189-220.
- 성낙인, 『헌법학』, 서울: 법문사, 2012.
- 이남순, 「군병사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7.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도입 본격 추진 - 인권위 내 군 인권 보호 업무의 종합적 수행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보도자료, 2017.8.25.
- 장성대, 「군내 폭행사건 및 자살사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전광석, 『한국헌법론』, 서울: 집현재, 2011.
- 정미경, 고기숙, 「군병사들의 자아존중감과 우울이 자살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0권 제4호, 2009, pp. 453-483.
- 정신영, 이동귀, 박현주, 「자살시도 병사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연구」, 『상담학연구』, 제13권 제1호, 2012, pp. 113-133.
- 홍점동, 양난미, 「군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소외감, 욕구좌절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4권 제2호, 2013, pp. 1423-1441.

[부록] 군 인권 신고 · 상담센터의 신고 · 상담 추이

[부록 1] 국방헬프콜 신고 · 상담 건수 추이

(단위: 건)

| 구분 | | 계 | | |
|------|-----|--------|--------|--------|
| | | 전화 | 사이버 | 총계 |
| 2014 | 육군 | 4,344 | 7,192 | 11,536 |
| | 해군 | 226 | 760 | 986 |
| | 공군 | 336 | 571 | 907 |
| | 해병대 | 256 | 242 | 498 |
| | 국직 | 125 | 685 | 810 |
| | 민간 | 1,293 | 44 | 1,337 |
| | 미상 | 1,073 | 92 | 1,165 |
| | 기타 | 17 | 2 | 19 |
| | 계 | 7,670 | 9,588 | 17,258 |
| 2015 | 육군 | 10,290 | 18,501 | 28,791 |
| | 해군 | 660 | 991 | 1,651 |
| | 공군 | 708 | 754 | 1,462 |
| | 해병대 | 793 | 398 | 1,191 |
| | 국직 | 465 | 930 | 1,395 |
| | 민간 | 3,991 | 105 | 4,096 |
| | 미상 | 1,530 | 199 | 1,729 |
| | 기타 | 150 | 17 | 167 |
| | 계 | 18,587 | 21,895 | 40,482 |
| 2016 | 육군 | 11,424 | 29,931 | 41,355 |
| | 해군 | 774 | 1,277 | 2,051 |
| | 공군 | 828 | 1,419 | 2,247 |
| | 해병대 | 551 | 625 | 1,176 |
| | 국직 | 436 | 1,276 | 1,712 |
| | 민간 | 6,548 | 291 | 6,839 |
| | 미상 | 1,894 | 535 | 2,429 |
| | 기타 | 162 | 19 | 181 |
| | 계 | 22,617 | 35,373 | 57,990 |

| 구분 | | 계 | | |
|------|-----|--------|--------|--------|
| | | 전화 | 사이버 | 총계 |
| 2017 | 육군 | 13,833 | 28,471 | 42,304 |
| | 해군 | 845 | 1,164 | 2,009 |
| | 공군 | 931 | 1,239 | 2,170 |
| | 해병대 | 782 | 703 | 1,485 |
| | 국직 | 517 | 1,005 | 1,522 |
| | 민간 | 9,899 | 673 | 10,572 |
| | 미상 | 2,941 | 919 | 3,860 |
| | 기타 | 206 | 21 | 227 |
| | 계 | 29,954 | 34,195 | 64,149 |
| 2018 | 육군 | 13,368 | 24,502 | 37,870 |
| | 해군 | 1,109 | 1,332 | 2,441 |
| | 공군 | 1,154 | 1,495 | 2,649 |
| | 해병대 | 1,182 | 919 | 2,101 |
| | 국직 | 635 | 1,108 | 1,743 |
| | 민간 | 9,798 | 744 | 10,542 |
| | 미상 | 2,990 | 933 | 3,923 |
| | 기타 | 169 | 16 | 185 |
| | 계 | 30,405 | 31,050 | 61,455 |
| 2019 | 육군 | 12,395 | 12,036 | 24,431 |
| | 해군 | 1,524 | 1,049 | 2,573 |
| | 공군 | 1,442 | 1,271 | 2,713 |
| | 해병대 | 1,441 | 685 | 2,126 |
| | 국직 | 746 | 819 | 1,565 |
| | 민간 | 10,532 | 1,176 | 11,708 |
| | 미상 | 2,395 | 1,234 | 3,629 |
| | 기타 | 155 | 32 | 187 |
| | 계 | 30,630 | 18,302 | 48,932 |

| 구분 | | 계 | | |
|------|-----|--------|--------|--------|
| | | 전화 | 사이버 | 총계 |
| 2020 | 육군 | 18,404 | 12,995 | 31,399 |
| | 해군 | 2,849 | 1,380 | 4,229 |
| | 공군 | 2,287 | 1,111 | 3,398 |
| | 해병대 | 1,984 | 754 | 2,738 |
| | 국직 | 1,104 | 876 | 1,980 |
| | 민간 | 10,407 | 978 | 11,385 |
| | 미상 | 1,791 | 1209 | 3,000 |
| | 기타 | 227 | 22 | 249 |
| | 계 | 39,053 | 19,325 | 58,378 |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p. 125-126.

[부록 2] 육군 - 군인권지킴이 인권·기본권 관련 신고·상담

(단위: 건)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5 | 평등권 | 5 | 3 | 9 | 0 | 1 | 0 | 18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8 | 15 | 44 | 2 | 9 | 0 | 78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31 | 28 | 7 | 0 | 1 | 0 | 67 |
| | 종교의 자유 | 7 | 0 | 6 | 0 | 0 | 0 | 13 |
| | 휴식권 | 9 | 5 | 14 | 0 | 2 | 0 | 30 |
| | 의료권 | 0 | 3 | 13 | 0 | 1 | 0 | 17 |
| | 외출/외박/휴가 | 12 | 11 | 91 | 1 | 4 | 0 | 119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7 | 3 | 1 | 1 | 1 | 0 | 13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1 | 0 | 0 | 0 | 0 | 1 |
| | 일반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0 | 0 | 0 | 1 | 6 | 0 | 7 |
| | 징계상담 | 0 | 0 | 1 | 0 | 0 | 0 | 1 |
| | 기타 | 42 | 51 | 129 | 3 | 42 | 3 | 270 |
| 총계 | 121 | 120 | 315 | 8 | 67 | 3 | 634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6 | 평등권 | 7 | 1 | 6 | 0 | 0 | 0 | 14 |
| | 신분차별 | 0 | 2 | 0 | 0 | 0 | 0 | 2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9 | 11 | 18 | 1 | 6 | 0 | 45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21 | 33 | 5 | 3 | 4 | 0 | 66 |
| | 종교의 자유 | 3 | 0 | 3 | 0 | 0 | 0 | 6 |
| | 휴식권 | 16 | 5 | 11 | 0 | 1 | 0 | 33 |
| | 의료권 | 0 | 0 | 2 | 0 | 0 | 0 | 2 |
| | 외출/외박/휴가 | 7 | 3 | 53 | 0 | 1 | 0 | 64 |
| | 사적 지시행위 | 1 | 2 | 2 | 0 | 0 | 0 | 5 |
| | 병영생활 | 0 | 1 | 1 | 0 | 0 | 0 | 2 |
| | 인권침해 기타 | 6 | 5 | 0 | 0 | 0 | 0 | 1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 | 1 | 3 | 0 | 1 | 0 | 6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2 | 2 | 0 | 1 | 0 | 0 | 5 |
| | 징계상담 | 1 | 0 | 1 | 0 | 3 | 0 | 5 |
| | 기타 | 34 | 34 | 58 | 7 | 29 | 0 | 162 |
| 총계 | 108 | 100 | 163 | 12 | 45 | 0 | 428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7 | 평등권 | 2 | 3 | 2 | 0 | 0 | 0 | 7 |
| | 신분차별 | 0 | 0 | 1 | 1 | 0 | 0 | 2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1 | 4 | 0 | 1 | 0 | 6 |
| | 폭언 및 모독 | 7 | 9 | 16 | 1 | 7 | 0 | 40 |
| | 사생활 | 31 | 29 | 20 | 0 | 1 | 0 | 81 |
| | 종교의 자유 | 4 | 2 | 8 | 0 | 0 | 0 | 14 |
| | 휴식권 | 8 | 2 | 13 | 0 | 0 | 0 | 23 |
| | 의료권 | 2 | 2 | 8 | 0 | 1 | 0 | 13 |
| | 외출/외박/휴가 | 5 | 6 | 81 | 0 | 2 | 0 | 94 |
| | 사적 지시행위 | 0 | 1 | 0 | 0 | 0 | 0 | 1 |
| | 병영생활 | 5 | 4 | 18 | 0 | 0 | 0 | 27 |
| | 인권침해 기타 | 7 | 6 | 8 | 1 | 2 | 0 | 24 |
| | 성추행 | 2 | 2 | 3 | 0 | 0 | 0 | 7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5 | 12 | 56 | 4 | 4 | 0 | 91 |
| | 인사관련 | 8 | 10 | 21 | 2 | 3 | 0 | 44 |
| | 법률상담 | 38 | 28 | 32 | 3 | 28 | 0 | 129 |
| | 징계상담 | 26 | 17 | 40 | 1 | 8 | 0 | 92 |
| | 기타 | 11 | 5 | 5 | 0 | 1 | 0 | 22 |
| 총계 | 171 | 139 | 336 | 13 | 58 | 0 | 717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8 | 평등권 | 1 | 1 | 4 | 0 | 1 | 0 | 7 |
| | 신분차별 | 0 | 1 | 0 | 0 | 0 | 0 | 1 |
| | 성차별 | 0 | 0 | 2 | 0 | 0 | 0 | 2 |
| | 폭행 및 가혹행위 | 1 | 1 | 9 | 0 | 1 | 0 | 12 |
| | 폭언 및 모독 | 5 | 2 | 11 | 1 | 4 | 0 | 23 |
| | 사생활 | 34 | 22 | 16 | 0 | 2 | 0 | 74 |
| | 종교의 자유 | 7 | 1 | 1 | 0 | 0 | 0 | 9 |
| | 휴식권 | 10 | 2 | 14 | 0 | 1 | 0 | 27 |
| | 의료권 | 0 | 2 | 5 | 0 | 2 | 0 | 9 |
| | 외출/외박/휴가 | 17 | 9 | 48 | 2 | 6 | 0 | 82 |
| | 사적 지시행위 | 0 | 1 | 1 | 0 | 1 | 0 | 3 |
| | 병영생활 | 7 | 12 | 15 | 2 | 3 | 0 | 39 |
| | 인권침해 기타 | 38 | 6 | 8 | 2 | 2 | 0 | 56 |
| | 성추행 | 0 | 0 | 1 | 0 | 0 | 0 | 1 |
| | 성희롱 | 3 | 1 | 2 | 0 | 1 | 0 | 7 |
| | 일반생활 | 39 | 24 | 35 | 2 | 8 | 0 | 108 |
| | 인사관련 | 29 | 17 | 13 | 2 | 3 | 0 | 64 |
| | 법률상담 | 144 | 91 | 50 | 21 | 27 | 0 | 333 |
| | 징계상담 | 83 | 120 | 58 | 1 | 22 | 0 | 285 |
| | 기타 | 35 | 19 | 8 | 1 | 6 | 0 | 69 |
| 총계 | 442 | 332 | 301 | 34 | 90 | 0 | 1,200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9 | 평등권 | 1 | 1 | 1 | 0 | 0 | 0 | 3 |
| | 신분차별 | 0 | 0 | 1 | 0 | 0 | 0 | 1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3 | 3 | 5 | 0 | 3 | 0 | 14 |
| | 폭언 및 모독 | 11 | 9 | 9 | 9 | 7 | 0 | 45 |
| | 사생활 | 19 | 20 | 7 | 2 | 1 | 0 | 49 |
| | 종교의 자유 | 0 | 1 | 2 | 0 | 1 | 0 | 4 |
| | 휴식권 | 10 | 7 | 6 | 1 | 0 | 1 | 25 |
| | 의료권 | 2 | 2 | 5 | 0 | 0 | 0 | 9 |
| | 외출/외박/휴가 | 17 | 9 | 30 | 3 | 1 | 0 | 60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병영생활 | 9 | 6 | 4 | 1 | 1 | 0 | 21 |
| | 인권침해 기타 | 9 | 4 | 4 | 0 | 1 | 1 | 19 |
| | 성추행 | 0 | 1 | 0 | 0 | 0 | 0 | 1 |
| | 성희롱 | 2 | 2 | 2 | 2 | 1 | 0 | 9 |
| | 일반생활 | 34 | 21 | 28 | 3 | 3 | 1 | 90 |
| | 인사관련 | 24 | 22 | 15 | 0 | 2 | 0 | 63 |
| | 법률상담 | 96 | 69 | 51 | 9 | 20 | 0 | 245 |
| | 징계상담 | 102 | 91 | 39 | 4 | 23 | 0 | 259 |
| | 기타 | 18 | 6 | 5 | 3 | 14 | 0 | 46 |
| 총계 | 357 | 274 | 215 | 37 | 78 | 3 | 964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20 | 평등권 | 4 | 3 | 3 | 4 | 1 | 0 | 15 |
| | 신분차별 | 1 | 1 | 0 | 0 | 2 | 0 | 4 |
| | 폭행 및 가혹행위 | 4 | 6 | 17 | 0 | 4 | 0 | 31 |
| | 폭언 및 모독 | 17 | 18 | 36 | 10 | 5 | 0 | 86 |
| | 사생활 | 79 | 43 | 17 | 4 | 1 | 0 | 144 |
| | 종교의 자유 | 2 | 0 | 4 | 0 | 0 | 0 | 6 |
| | 휴식권 | 21 | 26 | 24 | 3 | 1 | 0 | 75 |
| | 의료권 | 2 | 3 | 15 | 2 | 3 | 0 | 25 |
| | 외출/외박/휴가 | 16 | 13 | 48 | 1 | 2 | 0 | 80 |
| | 병영생활 | 25 | 14 | 31 | 2 | 5 | 0 | 77 |
| | 인권침해 기타 | 33 | 19 | 15 | 3 | 4 | 0 | 74 |
| | 성추행 | 1 | 0 | 0 | 0 | 1 | 0 | 2 |
| | 성희롱 | 2 | 2 | 0 | 1 | 0 | 0 | 5 |
| | 일반생활 | 109 | 40 | 124 | 9 | 19 | 1 | 302 |
| | 인사관련 | 56 | 32 | 96 | 3 | 15 | 0 | 202 |
| | 법률상담 | 168 | 69 | 64 | 14 | 27 | 0 | 342 |
| | 징계상담 | 148 | 179 | 65 | 4 | 13 | 0 | 409 |
| | 기타 | 59 | 41 | 40 | 15 | 16 | 0 | 171 |
| | 총계 | 747 | 509 | 599 | 75 | 119 | 1 | 2050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11.9.

[부록 3] 해군·해병대 - 군인권지킴이 인권·기본권 관련 신고·상담

(단위: 건)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5 | 평등권 | 0 | 0 | 1 | 0 | 0 | 0 | 1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7 | 2 | 3 | 1 | 0 | 1 | 14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9 | 4 | 2 | 0 | 0 | 0 | 15 |
| | 종교의 자유 | 0 | 1 | 0 | 0 | 0 | 0 | 1 |
| | 휴식권 | 0 | 2 | 12 | 0 | 0 | 1 | 15 |
| | 의료권 | 1 | 0 | 1 | 0 | 0 | 0 | 2 |
| | 외출/외박/ 휴가 | 1 | 2 | 2 | 0 | 0 | 0 | 5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1 | 1 | 0 | 0 | 0 | 0 | 2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15 | 14 | 10 | 2 | 3 | 0 | 44 |
| 총계 | 34 | 26 | 31 | 3 | 3 | 2 | 99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6 | 평등권 | 0 | 0 | 0 | 0 | 0 | 0 | 0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2 | 3 | 0 | 0 | 0 | 5 |
| | 폭언 및 모독 | 0 | 1 | 0 | 0 | 0 | 0 | 1 |
| | 사생활 | 5 | 3 | 0 | 1 | 0 | 0 | 9 |
| | 종교의 자유 | 1 | 0 | 0 | 0 | 0 | 0 | 1 |
| | 휴식권 | 1 | 4 | 6 | 0 | 0 | 0 | 11 |
| | 의료권 | 1 | 0 | 0 | 0 | 0 | 0 | 1 |
| | 외출/외박/ 휴가 | 0 | 1 | 1 | 0 | 1 | 0 | 3 |
| | 사적 지시행위 | 3 | 1 | 0 | 0 | 0 | 0 | 4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1 | 2 | 0 | 0 | 0 | 0 | 3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 | 0 | 0 | 0 | 0 | 0 | 1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1 | 0 | 0 | 0 | 0 | 1 | 2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17 | 12 | 11 | 1 | 1 | 0 | 42 |
| 총계 | 31 | 26 | 21 | 2 | 3 | 0 | 83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7 | 평등권 | 2 | 0 | 1 | 0 | 0 | 0 | 3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폭언 및 모독 | 0 | 2 | 1 | 0 | 0 | 0 | 3 |
| | 사생활 | 1 | 3 | 1 | 0 | 0 | 0 | 5 |
| | 종교의 자유 | 1 | 0 | 0 | 0 | 0 | 0 | 1 |
| | 휴식권 | 3 | 1 | 2 | 0 | 0 | 0 | 6 |
| | 의료권 | 1 | 0 | 1 | 0 | 0 | 0 | 2 |
| | 외출/외박/ 휴가 | 0 | 1 | 3 | 0 | 0 | 0 | 4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0 | 2 | 0 | 0 | 0 | 0 | 2 |
| | 인권침해 기타 | 10 | 0 | 0 | 0 | 1 | 0 | 1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2 | 2 | 3 | 0 | 0 | 0 | 7 |
| | 인사관련 | 0 | 0 | 1 | 0 | 0 | 0 | 1 |
| | 법률상담 | 3 | 10 | 1 | 5 | 2 | 0 | 21 |
| | 징계상담 | 3 | 4 | 1 | 0 | 0 | 0 | 8 |
| | 기타 | 7 | 4 | 3 | 0 | 0 | 0 | 14 |
| 총계 | 33 | 29 | 19 | 5 | 3 | 0 | 89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8 | 평등권 | 0 | 0 | 0 | 0 | 0 | 0 | 0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폭언 및 모독 | 0 | 0 | 1 | 0 | 0 | 0 | 1 |
| | 사생활 | 0 | 1 | 0 | 0 | 0 | 0 | 1 |
| | 종교의 자유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권 | 2 | 2 | 1 | 0 | 0 | 0 | 5 |
| | 의료권 | 0 | 0 | 1 | 0 | 0 | 0 | 1 |
| | 외출/외박/ 휴가 | 2 | 0 | 2 | 0 | 0 | 0 | 4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1 | 3 | 1 | 0 | 0 | 0 | 5 |
| | 인권침해 기타 | 3 | 2 | 0 | 0 | 0 | 0 | 5 |
| | 성추행 | 0 | 0 | 0 | 0 | 1 | 0 | 1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3 | 4 | 1 | 0 | 1 | 0 | 9 |
| | 인사관련 | 1 | 3 | 1 | 0 | 2 | 0 | 7 |
| | 법률상담 | 4 | 11 | 3 | 3 | 2 | 0 | 23 |
| | 징계상담 | 2 | 3 | 1 | 0 | 0 | 0 | 6 |
| | 기타 | 1 | 2 | 1 | 2 | 0 | 1 | 7 |
| 총계 | 19 | 31 | 13 | 5 | 6 | 1 | 75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19 | 평등권 | 0 | 0 | 0 | 0 | 0 | 0 | 0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0 | 2 | 0 | 3 | 0 | 5 |
| | 폭언 및 모독 | 9 | 6 | 0 | 1 | 0 | 0 | 16 |
| | 사생활 | 11 | 6 | 3 | 3 | 1 | 0 | 24 |
| | 종교의 자유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권 | 14 | 7 | 2 | 0 | 2 | 0 | 25 |
| | 의료권 | 1 | 1 | 1 | 1 | 2 | 0 | 6 |
| | 외출/외박/ 휴가 | 5 | 4 | 14 | 0 | 1 | 0 | 24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병영생활 | 4 | 5 | 9 | 0 | 1 | 0 | 19 |
| | 인권침해 기타 | 4 | 2 | 1 | 2 | 0 | 0 | 9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1 | 6 | 9 | 0 | 3 | 0 | 29 |
| | 인사관련 | 6 | 13 | 5 | 3 | 3 | 0 | 30 |
| | 법률상담 | 54 | 68 | 8 | 22 | 10 | 0 | 162 |
| | 징계상담 | 28 | 17 | 21 | 2 | 1 | 0 | 69 |
| | 기타 | 7 | 9 | 0 | 1 | 4 | 0 | 21 |
| 총계 | 154 | 144 | 76 | 35 | 31 | 0 | 440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 타 | 계 |
|------|--------------|----|-------|----|-----|-----|--------|----|
| 2020 | 평등권 | 0 | 0 | 0 | 0 | 0 | 0 | 0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2 | 3 | 0 | 0 | 0 | 5 |
| | 폭언 및 모독 | 0 | 1 | 0 | 0 | 0 | 0 | 1 |
| | 사생활 | 5 | 3 | 0 | 1 | 0 | 0 | 9 |
| | 종교의 자유 | 1 | 0 | 0 | 0 | 0 | 0 | 1 |
| | 휴식권 | 1 | 4 | 6 | 0 | 0 | 0 | 11 |
| | 의료권 | 1 | 0 | 0 | 0 | 0 | 0 | 1 |
| | 외출/외박/ 휴가 | 0 | 1 | 1 | 0 | 1 | 0 | 3 |
| | 사적 지시행위 | 3 | 1 | 0 | 0 | 0 | 0 | 4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1 | 2 | 0 | 0 | 0 | 0 | 3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 | 0 | 0 | 0 | 0 | 0 | 1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1 | 0 | 0 | 0 | 0 | 1 | 2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17 | 12 | 11 | 1 | 1 | 0 | 42 |
| 총계 | 31 | 26 | 21 | 2 | 3 | 0 | 83 |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11.9.

[부록 4] 공군 - 군인권지킴이 인권·기본권 관련 신고·상담

(단위: 건)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5 | 평등권 | 0 | 1 | 3 | 0 | 0 | 0 | 4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3 | 1 | 9 | 2 | 0 | 0 | 15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9 | 8 | 4 | 0 | 0 | 0 | 21 |
| | 종교의 자유 | 0 | 0 | 1 | 0 | 0 | 0 | 1 |
| | 휴식권 | 0 | 2 | 11 | 0 | 0 | 0 | 13 |
| | 의료권 | 0 | 0 | 1 | 0 | 4 | 0 | 5 |
| | 외출/외박/ 휴가 | 2 | 0 | 4 | 0 | 0 | 0 | 6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0 | 1 | 0 | 0 | 0 | 0 | 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7 | 8 | 54 | 0 | 3 | 9 | 72 |
| 총계 | 21 | 21 | 87 | 2 | 7 | 0 | 138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6 | 평등권 | 0 | 0 | 0 | 0 | 0 | 0 | 0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1 | 1 | 3 | 0 | 0 | 0 | 5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종교의 자유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권 | 0 | 0 | 1 | 0 | 0 | 0 | 1 |
| | 의료권 | 0 | 0 | 0 | 0 | 0 | 0 | 0 |
| | 외출/외박/ 휴가 | 0 | 0 | 0 | 0 | 0 | 0 | 0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1 |
| | 인권침해 기타 | 1 | 0 | 0 | 0 | 0 | 0 | 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0 | 0 | 2 | 0 | 0 | 0 | 2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0 | 0 | 1 | 0 | 0 | 0 | 1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1 | 0 | 3 | 0 | 0 | 0 | 4 |
| 총계 | 3 | 1 | 11 | 0 | 0 | 0 | 15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7 | 평등권 | 0 | 1 | 0 | 0 | 0 | 0 | 1 |
| | 신분차별 | 0 | 0 | 1 | 0 | 0 | 0 | 1 |
| | 성차별 | 1 | 0 | 0 | 0 | 0 | 0 | 1 |
| | 폭행 및 가혹행위 | 1 | 0 | 1 | 0 | 0 | 0 | 2 |
| | 폭언 및 모독 | 1 | 5 | 6 | 0 | 0 | 0 | 12 |
| | 사생활 | 9 | 7 | 4 | 0 | 0 | 0 | 20 |
| | 종교의 자유 | 0 | 1 | 0 | 0 | 0 | 0 | 1 |
| | 휴식권 | 1 | 2 | 12 | 1 | 0 | 0 | 16 |
| | 의료권 | 0 | 0 | 2 | 0 | 0 | 0 | 2 |
| | 외출/외박/ 휴가 | 2 | 4 | 10 | 0 | 1 | 0 | 17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3 | 1 | 6 | 0 | 0 | 0 | 10 |
| | 인권침해 기타 | 4 | 4 | 3 | 0 | 0 | 0 | 1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2 | 7 | 5 | 0 | 0 | 0 | 14 |
| | 인사관련 | 0 | 4 | 0 | 0 | 0 | 0 | 4 |
| | 법률상담 | 5 | 2 | 1 | 2 | 0 | 0 | 10 |
| | 징계상담 | 5 | 1 | 1 | 0 | 0 | 0 | 7 |
| | 기타 | 4 | 3 | 9 | 1 | 0 | 0 | 17 |
| 총계 | 38 | 42 | 61 | 4 | 1 | 0 | 146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8 | 평등권 | 1 | 0 | 0 | 0 | 0 | 0 | 1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2 | 0 | 0 | 0 | 0 | 0 | 2 |
| | 폭행 및 가혹행위 | 1 | 0 | 1 | 1 | 0 | 0 | 3 |
| | 폭언 및 모독 | 1 | 3 | 5 | 0 | 0 | 0 | 9 |
| | 사생활 | 6 | 1 | 6 | 0 | 0 | 0 | 13 |
| | 종교의 자유 | 2 | 0 | 0 | 0 | 0 | 0 | 2 |
| | 휴식권 | 3 | 2 | 11 | 0 | 0 | 0 | 16 |
| | 의료권 | 0 | 0 | 2 | 0 | 0 | 0 | 2 |
| | 외출/외박/ 휴가 | 4 | 2 | 6 | 0 | 0 | 0 | 12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병영생활 | 1 | 3 | 3 | 0 | 0 | 0 | 7 |
| | 인권침해 기타 | 1 | 4 | 3 | 0 | 2 | 0 | 10 |
| | 성추행 | 0 | 0 | 1 | 0 | 0 | 0 | 1 |
| | 성희롱 | 0 | 1 | 0 | 0 | 0 | 0 | 1 |
| | 일반생활 | 5 | 4 | 17 | 0 | 0 | 0 | 26 |
| | 인사관련 | 2 | 2 | 4 | 0 | 0 | 0 | 8 |
| | 법률상담 | 8 | 4 | 3 | 0 | 0 | 0 | 15 |
| | 징계상담 | 2 | 3 | 1 | 0 | 0 | 0 | 6 |
| | 기타 | 4 | 3 | 3 | 0 | 0 | 0 | 10 |
| 총계 | 43 | 32 | 67 | 1 | 2 | 0 | 145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9 | 평등권 | 0 | 0 | 1 | 0 | 0 | 0 | 1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폭언 및 모독 | 3 | 4 | 7 | 0 | 1 | 0 | 15 |
| | 사생활 | 7 | 2 | 2 | 0 | 1 | 0 | 12 |
| | 종교의 자유 | 1 | 1 | 1 | 0 | 0 | 0 | 3 |
| | 휴식권 | 2 | 4 | 5 | 0 | 0 | 0 | 11 |
| | 의료권 | 0 | 2 | 0 | 0 | 1 | 0 | 3 |
| | 외출/외박/ 휴가 | 2 | 3 | 2 | 0 | 0 | 0 | 7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2 | 3 | 6 | 0 | 0 | 0 | 11 |
| | 인권침해 기타 | 3 | 1 | 5 | 2 | 0 | 0 | 1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5 | 3 | 18 | 0 | 2 | 0 | 28 |
| | 인사관련 | 2 | 3 | 4 | 0 | 1 | 0 | 10 |
| | 법률상담 | 10 | 2 | 4 | 1 | 3 | 0 | 20 |
| | 징계상담 | 1 | 2 | 5 | 0 | 0 | 0 | 8 |
| | 기타 | 12 | 5 | 5 | 2 | 2 | 0 | 26 |
| 총계 | 50 | 35 | 66 | 5 | 11 | 0 | 167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20 | 평등권 | 1 | 1 | 4 | 0 | 1 | 0 | 7 |
| | 폭언 및 모독 | 2 | 3 | 6 | 0 | 0 | 0 | 11 |
| | 사생활 | 10 | 6 | 4 | 0 | 0 | 0 | 20 |
| | 종교의 자유 | 1 | 0 | 0 | 0 | 0 | 0 | 1 |
| | 휴식권 | 2 | 2 | 8 | 0 | 0 | 0 | 12 |
| | 의료권 | 0 | 0 | 2 | 0 | 0 | 0 | 2 |
| | 외출/외박/휴가 | 2 | 2 | 14 | 1 | 1 | 0 | 20 |
| | 병영생활 | 2 | 1 | 4 | 0 | 1 | 0 | 8 |
| | 인권침해 기타 | 9 | 4 | 6 | 1 | 1 | 0 | 21 |
| | 성추행 | 1 | 0 | 2 | 0 | 0 | 0 | 3 |
| | 일반생활 | 5 | 6 | 22 | 1 | 0 | 0 | 34 |
| | 인사관련 | 0 | 1 | 1 | 1 | 0 | 0 | 3 |
| | 법률상담 | 13 | 12 | 3 | 1 | 3 | 0 | 32 |
| | 징계상담 | 0 | 2 | 3 | 0 | 0 | 0 | 5 |
| | 기타 | 12 | 1 | 1 | 1 | 2 | 0 | 17 |
| | 총계 | 60 | 41 | 80 | 6 | 9 | 0 | 196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11.9.

[부록 5] 국방부·국직부대 - 군인권지킴이 인권·기본권 관련
신고·상담

(단위: 건)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5 | 평등권 | 1 | 3 | 1 | 0 | 0 | 0 | 5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5 | 2 | 7 | 0 | 4 | 0 | 18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2 | 4 | 0 | 0 | 1 | 0 | 7 |
| | 종교의 자유 | 0 | 0 | 2 | 0 | 0 | 0 | 2 |
| | 휴식권 | 2 | 3 | 8 | 0 | 0 | 0 | 13 |
| | 의료권 | 1 | 1 | 2 | 0 | 3 | 0 | 7 |
| | 외출/외박 /휴가 | 2 | 0 | 4 | 0 | 0 | 0 | 6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0 | 1 | 0 | 1 | 0 | 0 | 2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7 | 5 | 26 | 1 | 12 | 1 | 52 |
| 총계 | 20 | 19 | 50 | 2 | 20 | 1 | 112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6 | 평등권 | 0 | 0 | 1 | 0 | 0 | 0 | 1 |
| | 신분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14 | 3 | 3 | 1 | 0 | 0 | 21 |
| | 폭언 및 모독 | 0 | 0 | 0 | 0 | 0 | 0 | 0 |
| | 사생활 | 14 | 8 | 4 | 0 | 1 | 0 | 27 |
| | 종교의 자유 | 0 | 0 | 1 | 0 | 0 | 0 | 1 |
| | 휴식권 | 2 | 2 | 12 | 1 | 1 | 0 | 18 |
| | 의료권 | 0 | 2 | 3 | 0 | 2 | 0 | 7 |
| | 외출/외박 /휴가 | 0 | 2 | 11 | 0 | 2 | 0 | 15 |
| | 사적 지시행위 | 1 | 0 | 0 | 0 | 1 | 0 | 2 |
| | 병영생활 | 0 | 0 | 0 | 0 | 0 | 0 | 0 |
| | 인권침해 기타 | 1 | 2 | 0 | 0 | 0 | 0 | 3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0 | 0 | 1 | 0 | 0 | 0 | 1 |
| | 인사관련 | 0 | 0 | 0 | 0 | 0 | 0 | 0 |
| | 법률상담 | 0 | 1 | 0 | 0 | 0 | 0 | 1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0 | 0 | 0 |
| | 기타 | 15 | 12 | 20 | 2 | 10 | 0 | 60 |
| 총계 | 47 | 32 | 56 | 4 | 17 | 0 | 157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7 | 평등권 | 1 | 0 | 0 | 3 | 1 | 0 | 5 |
| | 신분차별 | 0 | 1 | 1 | 1 | 0 | 0 | 3 |
| | 성차별 | 0 | 1 | 0 | 0 | 0 | 0 | 1 |
| | 폭행 및 가혹행위 | 1 | 0 | 3 | 0 | 0 | 0 | 4 |
| | 폭언 및 모독 | 3 | 4 | 3 | 0 | 0 | 0 | 10 |
| | 사생활 | 4 | 3 | 3 | 0 | 0 | 3 | 13 |
| | 종교의 자유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권 | 2 | 1 | 5 | 0 | 0 | 0 | 8 |
| | 의료권 | 0 | 0 | 2 | 0 | 1 | 0 | 3 |
| | 외출/외박 /휴가 | 0 | 1 | 5 | 0 | 0 | 0 | 6 |
| | 사적 지시행위 | 0 | 1 | 1 | 0 | 0 | 0 | 2 |
| | 병영생활 | 0 | 0 | 3 | 0 | 0 | 0 | 3 |
| | 인권침해 기타 | 4 | 1 | 0 | 0 | 1 | 0 | 6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2 | 6 | 9 | 0 | 1 | 0 | 18 |
| | 인사관련 | 4 | 1 | 3 | 3 | 1 | 0 | 12 |
| | 법률상담 | 5 | 2 | 0 | 1 | 2 | 0 | 10 |
| | 징계상담 | 1 | 0 | 0 | 0 | 0 | 0 | 1 |
| | 기타 | 2 | 5 | 3 | 4 | 8 | 0 | 22 |
| 총계 | 29 | 27 | 41 | 12 | 15 | 3 | 127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8 | 평등권 | 1 | 2 | 0 | 0 | 0 | 0 | 3 |
| | 신분차별 | 1 | 0 | 1 | 0 | 0 | 0 | 2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0 | 2 | 0 | 1 | 0 | 3 |
| | 폭언 및 모독 | 3 | 2 | 4 | 2 | 3 | 0 | 14 |
| | 사생활 | 3 | 0 | 6 | 2 | 0 | 0 | 11 |
| | 종교의 자유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권 | 2 | 1 | 4 | 1 | 1 | 0 | 9 |
| | 의료권 | 1 | 0 | 2 | 0 | 0 | 0 | 3 |
| | 외출/외박 /휴가 | 3 | 0 | 0 | 0 | 0 | 0 | 3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병영생활 | 3 | 0 | 0 | 1 | 0 | 0 | 4 |
| | 인권침해 기타 | 3 | 3 | 5 | 0 | 0 | 0 | 11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 | 3 | 10 | 1 | 0 | 0 | 15 |
| | 인사관련 | 4 | 0 | 7 | 0 | 0 | 0 | 11 |
| | 법률상담 | 2 | 2 | 4 | 0 | 1 | 0 | 9 |
| | 징계상담 | 0 | 1 | 1 | 0 | 0 | 0 | 2 |
| | 기타 | 7 | 3 | 3 | 4 | 6 | 1 | 24 |
| 총계 | 34 | 17 | 50 | 11 | 12 | 1 | 125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19 | 평등권 | 1 | 1 | 3 | 0 | 0 | 0 | 5 |
| | 신분차별 | 0 | 0 | 1 | 0 | 0 | 0 | 1 |
| | 성차별 | 0 | 0 | 0 | 0 | 0 | 0 | 0 |
| | 폭행 및 가혹행위 | 0 | 0 | 1 | 0 | 0 | 0 | 1 |
| | 폭언 및 모독 | 6 | 2 | 4 | 0 | 1 | 0 | 13 |
| | 사생활 | 0 | 1 | 3 | 0 | 0 | 0 | 4 |
| | 종교의 자유 | 0 | 0 | 0 | 0 | 0 | 0 | 0 |
| | 휴식권 | 1 | 0 | 3 | 2 | 0 | 0 | 6 |
| | 의료권 | 0 | 0 | 4 | 0 | 1 | 0 | 5 |
| | 외출/외박 /휴가 | 1 | 0 | 4 | 1 | 0 | 0 | 6 |
| | 사적 지시행위 | 0 | 0 | 0 | 0 | 0 | 0 | 0 |
| | 병영생활 | 2 | 2 | 2 | 0 | 0 | 0 | 6 |
| | 인권침해 기타 | 1 | 3 | 3 | 1 | 0 | 0 | 8 |
| | 성추행 | 0 | 0 | 0 | 0 | 0 | 0 | 0 |
| | 성희롱 | 0 | 0 | 0 | 0 | 0 | 0 | 0 |
| | 일반생활 | 1 | 0 | 8 | 1 | 0 | 0 | 10 |
| | 인사관련 | 1 | 1 | 3 | 1 | 1 | 0 | 7 |
| | 법률상담 | 9 | 4 | 2 | 5 | 0 | 0 | 20 |
| | 징계상담 | 0 | 0 | 0 | 0 | 2 | 0 | 2 |
| | 기타 | 6 | 4 | 4 | 2 | 8 | 1 | 26 |
| 총계 | 29 | 18 | 45 | 13 | 13 | 1 | 120 | |

| 연도 | 구분 | 장교 | 준·부사관 | 병 | 군무원 | 민간인 | 기타 | 계 |
|------|-----------|----|-------|----|-----|-----|-----|----|
| 2020 | 평등권 | 4 | 1 | 1 | 0 | 0 | 0 | 6 |
| | 신분차별 | 0 | 2 | 0 | 0 | 2 | 0 | 4 |
| | 성차별 | 1 | 0 | 0 | 0 | 0 | 0 | 1 |
| | 폭언 및 모독 | 1 | 3 | 1 | 1 | 0 | 0 | 6 |
| | 사생활 | 2 | 5 | 3 | 1 | 0 | 0 | 11 |
| | 종교의 자유 | 1 | 0 | 0 | 3 | 0 | 0 | 4 |
| | 휴식권 | 1 | 3 | 1 | 1 | 1 | 0 | 7 |
| | 의료권 | 2 | 0 | 0 | 0 | 2 | 0 | 4 |
| | 외출/외박 /휴가 | 2 | 0 | 8 | 0 | 0 | 0 | 10 |
| | 병영생활 | 2 | 0 | 1 | 0 | 0 | 0 | 3 |
| | 인권침해 기타 | 4 | 5 | 1 | 1 | 0 | 0 | 11 |
| | 성희롱 | 1 | 0 | 0 | 0 | 0 | 0 | 1 |
| | 일반생활 | 0 | 1 | 4 | 0 | 0 | 0 | 5 |
| | 인사관련 | 1 | 1 | 1 | 0 | 0 | 0 | 3 |
| | 법률상담 | 16 | 6 | 1 | 7 | 3 | 0 | 33 |
| | 징계상담 | 16 | 6 | 5 | 1 | 1 | 0 | 29 |
| | 기타 | 12 | 1 | 5 | 4 | 11 | 1 | 34 |
| 총계 | 66 | 34 | 32 | 19 | 20 | 1 | 172 | |

출처: 국방부, 『국회입법조사처 제출자료』, 2021.11.9.

[부록 6] 군 인권교육 현황(2012-2019)

(단위: 명)

| | |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 | | | | | | | 사이버 인권교육 | | | | |
|------|---|-------------|------------------|------------------|------------------|-------------|-------------|------------------|----------|----------|----------|---------------|--------|
| | | 인권 교관 | 의 료 업 무 | 수 사 업 무 | 교 정 업 무 | 법 무 관 | 상 담 관 | 모 니 터 단 | 계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군대 와 인권 | 계 |
| 2012 | 육 | 20 | 0 | 19 | 20 | 17 | 48 | 0 | 124 | 2,463 | 2,429 | 0 | 4,892 |
| | 해 | 10 | 0 | 7 | 7 | 9 | 20 | 0 | 53 | 184 | 120 | 0 | 304 |
| | 공 | 10 | 0 | 7 | 5 | 6 | 14 | 0 | 42 | 30 | 35 | 0 | 65 |
| | 국 | 0 | 39 | 6 | 3 | 0 | 1 | 0 | 49 | 595 | 536 | 0 | 1,131 |
| | 계 | 40 | 39 | 39 | 35 | 32 | 83 | 0 | 268 | 3,272 | 3,120 | 0 | 6,392 |
| 2013 | 육 | 21 | 7 | 17 | 14 | 22 | 45 | 0 | 126 | 3,126 | 2,858 | 0 | 5,984 |
| | 해 | 8 | 2 | 6 | 7 | 6 | 7 | 0 | 36 | 1,737 | 1,432 | 0 | 3,169 |
| | 공 | 4 | 1 | 8 | 3 | 6 | 14 | 0 | 36 | 68 | 47 | 0 | 115 |
| | 국 | 4 | 19 | 4 | 2 | 0 | 17 | 0 | 46 | 460 | 399 | 0 | 859 |
| | 계 | 37 | 29 | 35 | 26 | 34 | 83 | 0 | 244 | 5,391 | 4,736 | 0 | 10,127 |
| 2014 | 육 | 12 | 8 | 18 | 6 | 24 | 39 | 18 | 125 | 4,044 | 3,354 | 3,814 | 11,212 |
| | 해 | 3 | 4 | 5 | 4 | 9 | 10 | 5 | 40 | 833 | 666 | 201 | 1,700 |
| | 공 | 5 | 4 | 9 | 4 | 11 | 21 | 37 | 91 | 350 | 342 | 197 | 889 |
| | 국 | 40 | 22 | 5 | - | - | 15 | 11 | 93 | 857 | 639 | 588 | 2,084 |
| | 계 | 60 | 38 | 37 | 14 | 44 | 85 | 71 | 349 | 15,885 | 5,001 | 4,800 | 15,885 |
| 2015 | 육 | 619 | - | 102 | - | 34 | 40 | 19 | 712 | 3,259 | 2,610 | 3,364 | 9,233 |
| | 해 | 32 | - | - | - | 8 | 21 | 9 | 70 | 309 | 247 | 532 | 1,088 |
| | 공 | 36 | - | - | - | 3 | 17 | 17 | 73 | 165 | 117 | 384 | 666 |
| | 국 | 72 | - | - | - | - | 17 | 3 | 194 | 1,064 | 328 | 1,336 | 2,728 |
| | 계 | 759 | - | 102 | - | 45 | 95 | 48 | 1,094 | 4,797 | 3,302 | 5,616 | 13,715 |

| | | 인권업무 종사자 교육 | | | | | | | 사이버 인권교육 | | | | |
|------|---|-------------|----------|----------|----------|---------|---------|-----------|----------|----------|----------|---------------|--------|
| | | 인권 교관 | 의료 업무 | 수사 업무 | 교정 업무 | 법무 관 | 상담 관 | 모니 터 단 | 계 | 기초 과정 | 심화 과정 | 군대 와 인권 | 계 |
| 2016 | 육 | 555 | 11 | 12 | 14 | 13 | 38 | 41 | 684 | 1,810 | 1,158 | 2,291 | 5,259 |
| | 해 | 35 | 0 | 0 | 1 | 0 | 15 | 7 | 58 | 66 | 170 | 118 | 354 |
| | 공 | 51 | 1 | 2 | 1 | 0 | 13 | 24 | 92 | 816 | 698 | 824 | 2,338 |
| | 국 | 45 | 5 | 4 | 0 | 0 | 6 | 19 | 79 | 1,223 | 803 | 1,239 | 3,265 |
| | 계 | 686 | 17 | 18 | 16 | 13 | 72 | 91 | 913 | 1,810 | 2,829 | 4,472 | 11,216 |
| 2017 | 육 | 589 | 11 | 13 | 11 | 40 | 61 | 25 | 750 | 817 | | 1,362 | 750 |
| | 해 | 74 | 1 | 116 | 27 | 0 | 14 | 5 | 237 | 207 | | 561 | 237 |
| | 공 | 20 | 2 | 3 | 0 | 0 | 9 | 6 | 40 | 205 | | 566 | 40 |
| | 국 | 27 | 5 | 2 | 0 | 0 | 11 | 1 | 46 | 1,047 | | 2,826 | 46 |
| | 계 | 710 | 19 | 134 | 38 | 40 | 95 | 37 | 1,073 | 2,276 | | 5,315 | 1,073 |
| 2018 | 육 | 531 | 13 | 14 | 18 | 25 | 43 | 29 | 673 | 632 | | 1,025 | 1,657 |
| | 해 | 83 | 2 | 4 | 1 | 4 | 21 | 4 | 119 | 160 | | 385 | 545 |
| | 공 | 23 | 1 | 2 | 1 | 3 | 5 | 2 | 37 | 122 | | 297 | 419 |
| | 국 | 50 | 4 | 1 | 0 | 2 | 20 | 2 | 79 | 996 | | 2,651 | 3,647 |
| | 계 | 687 | 20 | 21 | 20 | 34 | 89 | 37 | 908 | 1,910 | | 4,358 | 6,268 |
| 2019 | 육 | 548 | 23 | 8 | 23 | 21 | 70 | 22 | 715 | 818 | | 1,135 | 1,953 |
| | 해 | 53 | - | 3 | 1 | 6 | 10 | 1 | 74 | 207 | | 485 | 692 |
| | 공 | 23 | - | - | 1 | 6 | 6 | 3 | 39 | 89 | | 172 | 261 |
| | 국 | 63 | 5 | 1 | - | 1 | 24 | 8 | 102 | 1,138 | | 1,138 | 3,972 |
| | 계 | 687 | 28 | 12 | 25 | 34 | 110 | 34 | 930 | 2,252 | | 2,252 | 6,878 |

설명 1: 육(육군), 해(해군), 공(공군), 국(국직)

설명 2: 사이버인권교육 중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은 2017년도부터 ‘인권의 이해’ 과정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출처: 국방부, 『국방통계연보 2020』, 2020.12, pp. 221-222.

NARS 입법 · 정책 발간 일람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01호 |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 2018. 03. 13. | 허석재 |
| 제002호 |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 2018. 05. 31. |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
| 제003호 | 조세법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 2018. 06. 22. | 문은희 |
| 제004호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 2018. 06. 28. | 류영아 |
| 제005호 |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 2018. 07. 11. | 김종갑 |
| 제006호 |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 2018. 07. 26. | 조서연 |
| 제007호 |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 2018. 08. 08. | 조주은 최진응 |
| 제008호 |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 2018. 09. 21. | 허민숙 |
| 제009호 |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 2018. 11. 15. |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
| 제010호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 2018. 11. 29. | 김유향 김나정 |
| 제011호 |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018. 11. 29. | 신동윤 |
| 제012호 |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018. 12. 07. | 권성훈 |
| 제013호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 2018. 12. 10. | 김태엽 |
| 제014호 | 현행 '복지허브화' 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 | 2018. 12. 11. | 이만우 |
| 제015호 |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 2018. 12. 13. | 박선권 |
| 제016호 |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 2018. 12. 13. | 정준화 |
| 제017호 |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 2018. 12. 14. | 김현정 |
| 제018호 |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 2018. 12. 14. | 김진수 |
| 제019호 |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 2018. 12. 17. | 허민숙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20호 |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 2018. 12. 19. | 김도희 |
| 제021호 |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 2018. 12. 20. | 정민정 |
| 제022호 |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 2018. 12. 24. | 박재영 |
| 제023호 |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 2018. 12. 27. | 김예경 |
| 제024호 |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 2018. 12. 27. | 백상준 김예경 |
| 제025호 |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 2018. 12. 31. | 이승현 |
| 제026호 |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 2019. 01. 18. | 김창호 |
| 제027호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2019. 09. 24. | 류영아 |
| 제028호 |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 2019. 10. 31. | 박선권 |
| 제029호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2019. 11. 01. | 최미경 최정민 |
| 제030호 |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 2019. 11. 15. | 장은덕 |
| 제031호 |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 2019. 12. 10. | 김진수 |
| 제032호 |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 2019. 12. 16. | 박재영 |
| 제033호 |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제도의 점검 및 개선방안 | 2019. 12. 19. | 김은진 |
| 제034호 | 초·중등 소프트웨어교육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19. 12. 23. | 김유향 유지연 김나정 |
| 제035호 | 장애인의 지역 간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 서비스 실태 및 개선방안 | 2019. 12. 24. | 김영석 박준환 김대명 |
| 제036호 | 사업장 대기오염 총량관리제 현황과 개선방안 | 2019. 12. 26. | 이혜경 |
| 제037호 | 도로 유지관리 현황 및 과제 -도로 자산관리를 중심으로- | 2019. 12. 26. | 구세주 |
| 제038호 | 형사 사건관계인의 알권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 2019. 12. 27. | 백상준 |
| 제039호 | 일본 아베내각의 안보정책 변화 분석과 시사점 | 2019. 12. 27. | 박명희 |
| 제040호 | 제1차 -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의 주요내용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2019. 12. 31. | 김도희 |
| 제041호 | 상장회사 관련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2019. 12. 31. | 황현영 |
| 제042호 | 국세상담센터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19. 12. 31. | 문은희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43호 | 공정거래 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 방안 | 2019. 12. 31. | 강지원 조영은 |
| 제044호 |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 2020. 05. 22. | 허민숙 |
| 제045호 | 국회 안전신속처리제의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20. 05. 30. | 전진영 |
| 제046호 |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 | 2020. 06. 24. | 신동윤 |
| 제047호 | 철도 유희부지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및 정책과제 | 2020. 06. 30. | 구세주 |
| 제048호 |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 | 2020. 06. 30. | 김예성 하혜영 |
| 제049호 |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 2020. 07. 10. | 김창호 |
| 제050호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8. 07. | 김예성 |
| 제051호 |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과제와 개선방향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 2020. 08. 13. | 박선권 |
| 제052호 | 외교부 영사콜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8. 28. | 김예경 |
| 제053호 | 대통령제 정부의 초당적 내각 구성 사례와 시사점 | 2020. 09. 01. | 허석재 |
| 제054호 |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논의와 대안의 모색 | 2020. 09. 01. | 김종갑 허석재 |
| 제055호 | 빅데이터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9. 07. | 정준화 |
| 제056호 | 형사사법공통시스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0. 09. 18. | 박혜림 |
| 제057호 | 한반도 주변 경계미획정 구역에 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응과제 | 2020. 09. 21. | 정민정 |
| 제058호 | 상속세 미납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2020. 10. 07. | 장영환 |
| 제059호 | 리쇼어링 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020. 10. 08. | 김종규 |
| 제060호 | 2020 미국 대선 결과 분석 | 2020. 11. 26. | - |
| 제061호 |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 2020. 12. 04. | 허민숙 |
| 제062호 | 기후변화 대응 도시홍수 대책 | 2020. 12. 21. | 김진수 |
| 제063호 | 조선산업 친환경·스마트화 동향과 입법·정책과제 | 2020. 12. 23. | 김봉주 |
| 제064호 |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 투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 2020. 12. 29. | 박연수 |
| 제065호 | 공공임대주택 공급동향 분석과 정책과제 | 2020. 12. 30. | 장경석 송민경 |
| 제066호 | 농어촌 등 교통소외지역의 교통서비스 강화 방안 | 2020. 12. 30. | 박준환 김규호 |
| 제067호 |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정책 평가와 개선과제 | 2020. 12. 30. | 최진응 |
| 제068호 | 제20대 국회 입법활동 분석 | 2020. 12. 30. | 전진영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69호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정책 방안 | 2020. 12. 31. | 신용우 |
| 제070호 |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2020. 12. 31. | 김민창 박성용 |
| 제071호 | 기부금품 모집·사용제도 현황과 개선방향 | 2020. 12. 31. | 이송림 한경석 |
| 제072호 |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 2020. 12. 31. | 김광현 이재영 최정인 |
| 제073호 | 일본의 국제 활동 확대와 한국의 대응방향 | 2020. 12. 31. | 박명희 |
| 제074호 | 동북아 미세먼지 협력 : 현황과 과제 | 2020. 12. 31. | 이혜경 |
| 제075호 | 1회용 포장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보증금제도 도입 방안 | 2020. 12. 31. | 김경민 |
| 제076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2021. 03. 31. | 김형진 박영원 |
| 제077호 |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 2021. 05. 10. | 최은진 강지원 |
| 제078호 |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아동사망검토 제도 도입방안 | 2021. 05. 20. | 박선권 |
| 제079호 | 홈리스 청소년 지원 입법·정책과제 : 가정복귀 프레임을 넘어 | 2021. 06. 04. | 허민숙 |
| 제080호 |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 2021. 06. 17. | 류영아 |
| 제081호 |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령 및 쟁점과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 | 2021. 06. 30. | 이덕남 최재은 |
| 제082호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21. 07. 13. | 김예성 |
| 제083호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등교 확대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개선과제 | 2021. 08. 19. | 이덕남 유지연 최재은 |
| 제084호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현황과 개선과제 | 2021. 09. 29. | 류영아 |
| 제085호 |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현황과 향후 과제 | 2021. 10. 19. | 하혜영 김예성 |
| 제086호 | 주요국 의회 이해충돌 심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비교 | 2021. 10. 22. | 전진영 최정인 |
| 제087호 | 전기사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쟁점과 과제 | 2021. 10. 25. | 유재국 |
| 제088호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과제 | 2021. 11. 08. | 김예성 |
| 제089호 | 공공재정 환수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2021. 11. 15. | 김형진 |
| 제090호 | 미국의 남중국해 정책에서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의미와 시사점 | 2021. 11. 18. | 정민정 |

| 호 수 | 제 목 | 발간일 | 집필진 |
|-------|--|---------------|-------------------|
| 제091호 | 입원적합성심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 제도의 설계·운영 및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2021. 11. 25. | 이만우 |
| 제092호 | 하천수 사용허가 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 2021. 12. 01. | 김진수 |
| 제093호 |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해외진출 현황과 과제 | 2021. 12. 02. | 유의정 조인식 |
| 제094호 | 재활용환경성평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03. | 김경민 |
| 제095호 |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06. | 박소영 |
| 제096호 | 농업환경관리제도 현황과 입법·정책과제 | 2021. 12. 07. | 장영주 김규호 유제범 |
| 제097호 | 사이버침해대응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 2021. 12. 15. | 최정민 |

NARS 입법·정책 제98호

발 간 일 2021년 12월 16일
발 행 김만흠
편 집 정치행정조사실 외교안보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 · 6788 · 4529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 · 2273 · 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연구보고서'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865-14

© 국회입법조사처, 2021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NARS 입법·정책

주요 입법 및 정책에 관한 주제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로
수시 발간되고 있습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 6788. 4510(代) www.nars.go.kr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865-14

ISSN 2586-5668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